

世界 再保險市場의 發展과 規制環境

2000. 3.

嚴 倉 會

보험연구소

보험개발원

序 言

세계재보험시장은 '80년대 중반 미국의 배상책임보험위기와 90년대 초반 자연재해 누적손해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석면 클레임과 환경오염 클레임 등으로 손해율이 급등하고, 허리케인 앤드류등 자연재해로 연평균 약 300억 달러의 손해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터키, 대만 등지에서 지진,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토네이도, 시드니의 폭풍우, 태풍 바트등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그 손실규모가 수그러질 줄을 모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수의 원·재보험자가 시장에서 철수하고 로이즈시장이 재편되는 등 구조조정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세계유수의 대형전업재보험자들은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화를 꾀하면서 시장점유율을 넓혀 나가고 있다. 이러한 위험환경과 기업환경의 변화로 원·재보험자는 피보험위험을 넓히면서 기존의 위험전가시설을 보완하고 비용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재)보험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로써 생성된 것이 대체위험전가(ART)시장이다. 이 대체위험전가시설은 종전의 캡티브, 책임한정(Finite Risk) (재)보험, 보험위험의 증권화 및 보험파생상품을 모두 포괄한다.

한편 우리 나라의 재보험시장은 지난 30여년간 현재의 대한재보험(주)을 중심으로 의무재보험의 형태로 유지하여 오다가 1997년 4월 「국내우선출재」와 「해외요율구득협정」의 폐지로 이제는 완전 자율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의 대형 원·재보사와 보험 중개사들은 국내시장진입을 활발히 시도하고 있고, 가격 자유화 등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재보험상품과 재보험패턴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세계재보험시장을 전체적으로 조명하고 대체보험시장 및 책임한정 재보험의 발전상황을 짚어 봄으로서 우리 나라 재보험시장이 나아

갈 방향과 그 규제수준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였다. 특히 대체보험시장은 현재 진행중인 금융서비스 산업의 글로벌化 및 추가적 규제완화, 주주가치의 중요성 대두와 위험양태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전통재보험과 상호불가분의 관계 하에서 성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들 모두를 연구의 범위에 포함시켜 전개하고자 하였다. 이 보고서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겠으나 세계재보험시장의 발전과 규제상황을 전체적으로 조감할 수 있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에게 참고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이 보고서는 우리 원 보험연구소 임창희 객원연구위원에 의해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에 자문과 레퍼리를 기꺼이 맡아주신 신동호 박사와 안철경 선임연구원, 그리고 김해식 책임연구원에 감사를 표하며, 바쁜 와중에도 원 고교정과 자료제공에 도움을 준 윤찬호 연구원, 김지완 연구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2000년 2월

保 險 開 發 院

院 長 朴 性 昱

I. 序 論

세계금융환경은 '80년대 이후 변동환율제로의 이동, 금융자유화 및 국제화의 진전 등으로 불확실성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금리, 외환,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 각종 리스크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로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에 따라 금융기관의 영업전략도 고수익·고위험을 추구하고 있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파생금융상품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은 종래에 비하여 훨씬 다양하고 발전된 금융상품을 이용하고 있으며, 금융기관간 합병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서 세계의 금융당국은 시장진입, 업무영역, 금융상품개발 등에 대한 사전적 규제는 완화하는 대신 종합리스크 관리 등 지급능력의 확보를 통한 건전성감독은 강화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 국제보험감독관협의회(IAIS) 등 국제감독기구에서도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위한 각종 기준 및 지침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토록 적극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98년 하반기의 외환위기 이후 각종 금융관행 및 경영형태와 감독기준을 국제기준과 맞게 개혁하기로 IMF 등과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보험산업에 있어서는 지난해 지급여력 기준을 국제적인 건전성 규제기준에 맞추어 개정·보강하였고,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도입, 공시 및 회계제도를 통한 시장규율기능 강화, 적기시정조치제도의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국제적인 시장환경과 규제기준에 있어서 재보험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전통적 (재)보험시장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대체위험전가(ART)시장이 출현

하여 (재)보험상품의 증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연재해위험에 대한 보험 채권이 발행되고 있고, 외부지수와의 상관관계로 위험을 헷지하는 옵션·스왑 등의 보험파생상품도 등장하고 있다. 위험전가와 위험재무가 결합된 책임한정(Finite Risk) (재)보험 방식은 전통(재)보험 솔루션의 보완차원에서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세계보험감독관들은 이러한 ART솔루션이 보험회사의 지급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와 흥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손해보험(장기보험제외)출재율은 '96년에 18.9%, '97년에 17.9%로 세계 평균 14.0%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중 해외출재율은 5% 선을 유지하고 있고, 화재, 해상, 특종분야에서 출재율이 높다. 원보험자가 보유하고 있는 위험은 원보험자의 지급능력에 의해 보호되고, 재보험으로 전가된 위험은 재보험자의 지급능력으로 보호된다는 논리로 볼 때 재보험의 質은 그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외국출재보험에 주안점을 두고 위험의 국내보유극대화 차원이 아니라 재보험자의 신용위험의 차원에서 규제의 필요성, 정도, 방법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문의¹⁾ 구성은 제Ⅰ장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세계보험시장에서의 재보험거래상황을 전반적으로 개관하여 보고, 규제감독 측면에서의 국제적 추세를 살펴보았다. 제Ⅲ장에서는 대체위험전가(ART)시장의 발전에 따른 세계 각국의 시장상황과 규제 움직임, 그리고 일반재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제Ⅳ장에서는 일반재보험시장과 현실적으로 보완관계에 있는 책임한정 (재)보험의 유용성과 가용범위 등을 살펴보면서 일반재보험과의 비교를 통해서 규제·감독상의 어떤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제Ⅴ장에서는 주요국의 재보험 규제를 일반재보험과 책임한정재보험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국내 재보험시장의 대응을 살펴보았으며 마지막 제

1) 본 연구는 자료의 한정성으로 Swiss Re사의 발간물을 상당량 인용·참조하였음을 밝혀둔다.

VI장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II. 世界再保險市場의 成長

1. 概 況

최근 Swiss Re社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997년도 전 세계에서 원수 보험료는 손해보험 7,326억, 생명보험 1조4,791억 합계 2조 2,117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출재보험료는 1,242억 달러로 5.6%의 출재율을 나타내었으며, 손·생보간 출재금액비율을 보면 손해보험이 1,026억 달러로 83%, 생명보험이 216억 달러로 17%를 점하고 있다. 원수보험료에 대한 평균출재율은 손해보험이 14.0%, 생명보험이 1.5%을 기록하고 있다.

<표 1> 세계보험시장의 재보험 현황(1997)

· 손해보험

(단위 : 10억달러)

	원수보험료		출재보험료		출재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북 미	317.7	43.4	39.9	38.9	12.6
서 유 럽	247.5	33.8	36.1	35.1	14.6
일 본	65.2	8.9	4.3	4.2	6.6
아시아/ 태평양	54.9	7.5	12.4	12.1	22.6
중 남 미	21.7	3.0	3.3	3.2	15.1
기 타	25.7	3.5	6.7	6.5	16.4
계	732.6	100.0	102.6	100.0	14.0

· 생명 · 건강보험

(단위 : 10억달러)

	원수보험료		출재보험료		출재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북 미	661.8	44.7	10.6	49.1	1.6
서 유 럽	419.8	28.4	9.1	42.1	2.2
일 본	269.8	18.2	0.6	2.6	0.2
아시아/ 태평양	110.3	7.5	0.6	2.8	0.6
중 남 미	13.2	0.9	0.6	2.8	4.6
기 타	4.3	0.3	0.2	0.7	3.6
계	1,479.1	100.0	21.6	100.0	1.5

자료 : Swiss Re, Sigma No.9, 1998

<표 1>에서와 같이 출재보험료의 75% 이상이 북미와 서유럽에서 출재된 것이고, 4%가 일본 나머지 20% 정도가 아시아/ 태평양/ 중남미 국가로부터 출재된 것이다. 특기할 사항은 세계보험시장에서 북미, 서유럽, 일본은 세계시장 원수보험료 점유율에 비하여 출재율이 낮고 나머지 시장은 원수보험료 점유율이 낮음에도 출재율은 높아 재보험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손해보험의 경우 1997년도중 총 출재보험료는 1,026억 달러로 원수보험료 대비 평균출재율은 14.0%를 기록하고 있다. 북미(버뮤다 포함)에서의 출재보험료는 399억 달러로 전세계 손해보험 출재보험료의 38.9%를 점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서유럽이 35.1%를 점하고 있다.

서유럽의 출재율(14.6%)이 북미(12.6%)보다 높은 이유는 18개나 되는 보험시장에 5,000여개의 손해보험사가 산재해 있는 시장구조, 비례재보험방식의 선호경향(독일의 경우 80%가 비례재보험), 런던시장의 구조적 특성(담보

력이 약한 다수의 재보험자가 해상·항공·중공업등 산업관련 대형위험 인수)으로 높은 출재율(약 30%)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일본의 보험산업은 원보험료에 있어 8.9%의 높은 세계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또한 자연재해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손해보험 재보험료의 4.2%만을 점유하고 있고 출재율도 6.6%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본 원보험시장의 높은 集中度와 資本力에다 지진위험담보를 제공하고 있는 정부차원의 풀²⁾이 존재하고 있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의 재보험출재율은 22%선으로 세계평균 14%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는 이들 국가의 원보험자 담보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데 비하여 인수하는 위험은 신흥국가 특유의 기업성 산업위험으로 위험분산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생명·건강보험의 경우 1997년도중 총 출재보험료는 216억 달러로 수입보험료(원수보험료)대비 평균출재율이 1.5%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이 0.2%로 가장 낮은 출재율을 나타내고 있고, 중남미국가가 4.6%로 가장 높은 출재율을 보이고 있다.

생명·건강보험에 대한 재보험수요는 북미와 서유럽에 집중되어 있고, 이 두 지역에서의 출재보험료가 전체의 91%를 점하고 있다. 일본은 수입보험료에 있어 높은 세계시장점유율(18.2%)을 나타내고 있음에 비해서 낮은 출재보험료점유율(2.6%)을 보이고 있다. 나머지 시장의 세계시장점유율은 8.7%이나, 출재보험점유율과 출재율은 각각 6.3%와, 4%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일본에서의 지진위험담보는 민영보험과 정부가 재보험시설을 이용하여 합작형태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음이 특이함. 1999년 현재 지진담보금액은 총 4조 1,000억엔에 이르고 있는 바, 이 중 민영보험이 6,108.7억엔, 정부가 3조 4,891.3억엔의 보상책임을 지고 있음. Japan Non-Life Insurance, Newsletter, No.52, April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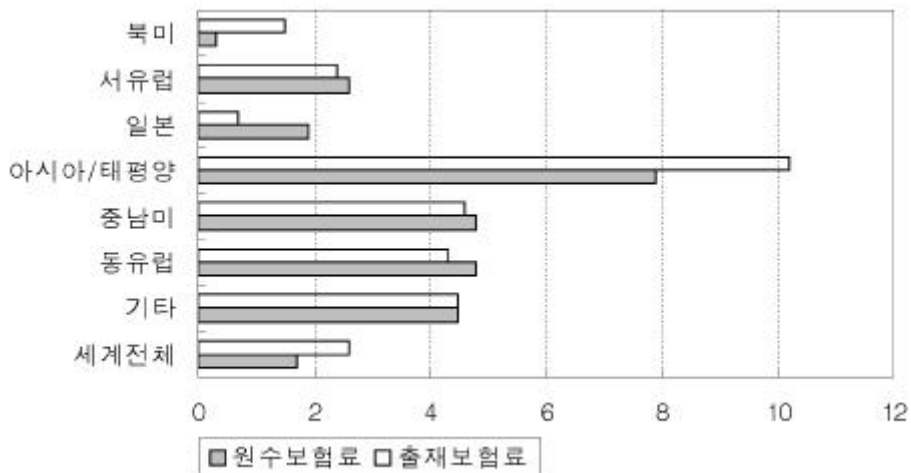
2. 再保險市場의 成長과 最近動向

가. 세계 재보험시장의 성장을

'90년부터 '97년까지 세계 손해보험 재보험시장의 실질성장율(인프레 조정후)은 2.6%로 원보험시장의 성장률 1.7%를 앞지르고 있다(<그림 1>참조). 지역별로 보면, 북미의 경우 원보험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재보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이는 버뮤다 소재 캡티브시장에서 재보험 수요가 창출되고 있고, 과거에 폴로 출재되던 것이 점차 일반 재보험시장으로 이전되고 있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림 1> 손해보험 재보험수요 실질성장율 (1990 ~ 1997)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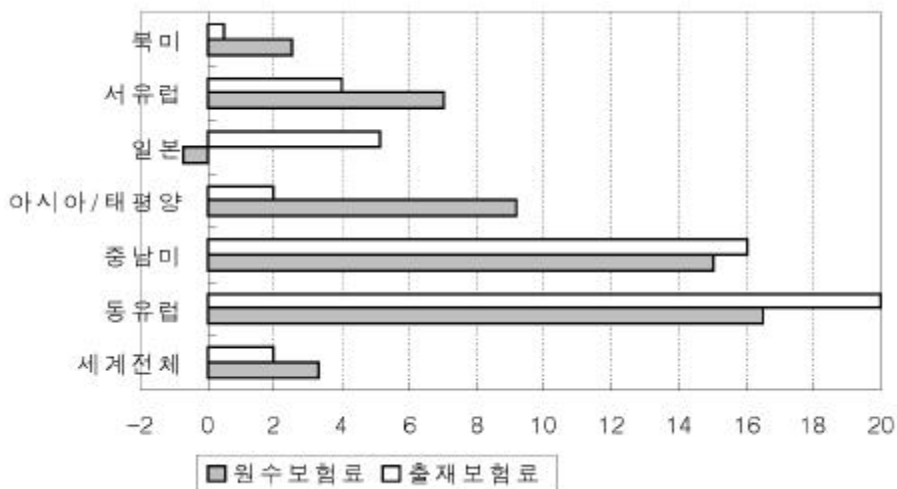


자료 : Swiss Re, Sigma, No.9, 1998

서유럽의 경우 기업합병 등 빠른 구조조정으로 재보험출재의 감소요인이 있음에도 원보험시장과 재보험시장이 비슷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재보험시장은 민영화 및 규제완화 조치 등으로 원보험시장보다 더 높은 실질성장율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 손해보험 재보험시장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신흥시장의 재보험점유율은 1997년에 18.8%로서 1990년의 11.7%보다 무려 60.6%(p) 성장을 보이고 있다.

생명·건강보험의 경우 1990년에 150억 달러이던 재보험료는 1997년에는 216억 달러로 약 2%의 실질성장(인플레이 조정후)을 보이고 있다(<그림2>참조). 지역별로 보면, 북미와 서구에서 재보험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일본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와 동구권 국가는 원보험과 재보험 모두 비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남미 국가와 동구권 국가의 성장율은 출재율 자체가 모두 낮기 때문에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그림 2> 생명·건강보험의 재보험수요 실질성장율 (1990 - 1997)
(단위 : %)



자료 : Swiss Re, Sigma No.9, 1998

나. 세계 재보험시장의 최근동향

'80년대 중반 미국에서의 배상책임보험위기³⁾와 90년대 초반 자연재해 누적손해⁴⁾로 인하여 세계재보험시장은 엄청난 변화를 겪어야 했다. 기존 재보험자의 시장철수와 신규재보험자의 시장진출 등 구조조정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세계유수의 대형전업재보험자들은 인수·합병 등을 통해 대형화를 꾀하면서 시장점유율을 넓혀 나가고 있다.⁵⁾

전통적으로 세계재보험시장은 전업재보험자가 지배하여 왔고, 지금도 독일, 스위스, 프랑스 등의 재보험공급자가 세계재보험시장의 상당분을 점유하고 있다. 런던과 로이즈시장은 '90년대 초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항공, 해상, 자연재해 등의 재보험 및 재재보험에 있어 아직도 그 독보적인 명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중요한 시장임에는 틀림없다.

미국의 재보험시장은 풀과 원보험자의 재보험소화능력이 감소해가고 있는 반면, 전업재보험자의 보험료수입과 자본력은 증대하고 있는 경향을 보

-
- 3) '80년대 이후 미국은 석면 클레임과 환경오염 클레임으로 손해율이 급등함. 보험자는 판결금액의 고액화로 엄청난 금액의 지급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했고, 보험요율 인상과 함께 극히 제한적인 담보만을 제공하거나 아예 담보제공 자체를 중지함. 이러한 담보제공의 위기는 결국 종래 occurrence방식의 증권에서 claims-made방식의 증권으로의 전환, 캡티브 설립의 성행, 금융재보험의 출현 등을 가져오게 하는 계기가 됨.
- 4) '90년 유럽에서의 겨울폭풍, '91년 일본에서의 태풍 Mireille, 미국에서의 허리케인 앤드류 등 5대 자연재해는 연간 290억 달러의 손해를 입힘. 이러한 자연재해는 배상책임보험 위기로부터 벗어나려는 시점에 집중되는 바람에 몇몇 원·재보험자가 시장에서 철수하고 로이즈시장 역시 '90년대 초에 심각한 재정난을 겪음. 이후 재보험업계는 보험 이외의 산업에서 자본을 끌어들이며 버뮤다에 소위 CAT (자연재해)전문재보험사를 설립하여 그간 로이즈와 기타 재보험시장이 메우지 못했던 담보력 부족 분을 채움. 당초 버뮤다회사들은 자연재해를 전업으로 하여 출발하였으나, 후에 다른 종목을 취급하는 보험자와 결합하여 사업범위를 넓혀 나감.
- 5) Munich Re, Swiss Re, General Re, Employers Re 등 소위 세계 4대 재보험자의 시장점유율은 1990년의 22%에서 최근에는 35%선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고 있다. 이는 그간 재보험자간 인수·합병⁶⁾으로 '89년에 80개에 달하였던 재보험자가 '97년에는 40여개로 줄어들면서 그 체질을 강화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근까지 자국시장에서만 영업을 하던 미국의 재보험자는 이제는 눈을 전세계지역으로 돌려 영업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과거 30년간 캡티브의 중심지였던 버뮤다시장이 크게 팽창하여 지금은 세계재보험시장 점유율 5%로서 이미 로이즈 시장을 능가하고 있다. 배상책임위험과 자연재해위험 등에 아직도 부족한 재보험담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시장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다는 장점 이외에 세제와 감독체계의 신축성으로 요즈음은 finite risk 솔루션⁷⁾등 혁신적인 보험/재보험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재보험의 출재경향과 패턴도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그간 원보험자의 구조조정으로 출재보험료가 감소되고 재보험 방식도 比例再保險(proportional reinsurance)에서 非比例再保險(non-proportional reinsurance)으로 바뀌고 있으며, 재보험공급에 있어서도 재무구조가 탄탄한 소수의 대형재보험자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재보험 방식에 있어서 비비례재보험방식인 초과손해액재보험(excess of loss reinsurance) 방식의 사용이 증대되고 있음은 재보험료를 절감하면서 자기보유를 늘리려는 시도로 풀이되고 있으나, 위험분산의 측면에서 비비례재보험이 비례재보험보다 안정적이지 못하고 따라서 위험자

6) 미국재보험시장에서의 인수·합병은 1996년에 그 절정에 달해 거래금액이 84억 달러로 지난 5년간 누계 60억달러를 초과함. Heidi. E. Hutter, "Convergency and innovation : Development in the reinsurance marketplace", *Risk Management*, Volume 44, New York, 1997

7) finite risk 솔루션 : 피보험자가 보유하고 있는 위험을 일정기간에 걸쳐 분산하고 위험인수주체의 책임한도액을 한정하고 투자이익을 공유하는 등으로 위험부담 코스트의 안정화를 꾀하는 대체위험전가 방안의 한 형태임.

본의 추가적 확충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본다.

전술한 finite risk솔루션과 관련하여 시장의 성격에 있어서도 종래의 전통적 재보험시장외에 위험전가기능과 금융기능이 결합된 소위 대체보험시장의 형성이 새로이 시도되고 있고, 상품 면에 있어서도 금융재보험상품, 증권화 상품, contingent capital⁸⁾등 종래에 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상품이 속속 출현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아울러 과거 등한시 되오 던 생명·건강보험의 재보험거래가 일부 대형전업재보험자를 중심으로 점차 활기를 띠고 있음이 특기할 사항이다.

다. 국내 재보험시장

우리나라 손해보험의 출재율은 '96년 12.4%, '97년 10.8%로서 세계평균출재율 14%는 물론 북미 12.6%, 서유럽 14.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참조).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손해보험료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고 재보험 수요가 약한 장기손해보험료를 제외하는 경우 출재율은 '96년 18.9%, '97년 17.9%로서 세계평균출재율은 물론 아시아/ 태평양국가의 출재율 22.6%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위험담보력상의 문제와 함께 보유의 보수성을 재검토해야 하는 문제를 제기해 주고 있다(<표 3>참조).

8) contingent capital : 약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합의된 금액과 조건으로 주식 또는 자금을 조달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함. 조건부 자본조달의 한 방식으로 매입자는 주로 보험회사이고 매입의 목적은 지급여력을 확보하거나 대형사고후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함임.

<표 2> 우리나라 손해보험 출재율

(단위 : 미화 백만달러, %)

			'96	'97
원수보험료		장기보험 포함(A)	15,239	13,935
		장기보험 제외(A')	10,011	8,431
출재보험료 (B)		국 내	1,331	1,020
		국 외	569	490
		계	1,900	1,510
출 재 율	원수보험료에 장기보험 포함(B/ A)	국 내	8.7	7.3
		국 외	3.7	3.5
		계	12.4	10.8
	원수보험료에 장기보험 제외(B/ A')	국 내	13.2	12.1
		국 외	5.7	5.8
		계	18.9	17.9

주 1) 출재율 산출에 있어 국내외 수재보험료는 고려하지 않음

2) Sigma지 대미환율 원용(미화 1달러당 '96년 837원, '97년 1,145원)

원수보험료 대비 종목별 출재율에 있어서 주로 비례적 재보험방식을 취하고 있는 화재, 해상, 특종보험은 60%선에서 80%선의 출재율을 보이고 있으나 비비례재보험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은 출재율이 1.5%선으로 거의 전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외출재율이 높은 종목은 해상, 특종보험으로 원수보험료 대비 30%선의 국외출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이 화재보험으로 20%선의 국외출재가 이루어지고 있다(<표 3>참조).

<표 3> 우리나라 손해보험 종목별 출재율

(단위 : 미화 백만달러, %)

원수 보험료		화 재		해 상		자동차		특 종		기 타	
		'96	'97	'96	'97	'96	'97	'96	'97	'96	'97
		429	281	496	348	7,205	5,394	854	736	836	1,200
출재 보험료	국내	254	180	145	89	79	84	411	319	257	179
	국외	113	55	170	137	10	6	266	279	10	13
	계	367	235	315	226	89	90	677	598	267	192
출재율	국내	59.2	64.1	29.2	25.5	1.1	1.6	48.1	43.3	30.7	14.9
	국외	26.3	19.6	34.2	39.4	0.1	0.1	31.1	37.9	1.2	1.1
	계	85.5	83.6	63.4	64.9	1.2	1.7	79.2	81.2	31.9	16.0

주 1) 출재율 산출에 있어서 국내외 수재보험료는 감안되지 아니함.

2) Sigma지 대미환율 원용 (미화 1달러당 '96 837원, '97 1,145원)

한편, 우리나라 생명보험의 출재율은 0.4%로서 <표 1>에서의 지역중 일본(0.2%)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출재율은 상품의 분류·성격 및 구성 등에 있어 나라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북미(1.6%), 서유럽(2.2%), 중남미(4.6%) 등과의 직접비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저축성 상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일본과 우리 나라로서는 출재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표 4> 우리나라 생명보험 출재율

(단위 : 미화 백만달러, %)

	'96	'97
수입보험료(A)	45,594	42,755
출재보험료(B)	166	176
출 재 율 (B/A)	0.4	0.4

주 : Sigma지 대미환율 원용(미화 1달러당 '96 837원, '97 1,145원)

3. 世界再保險市場의 規制監督水準

1996년 10월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보험감독관협의회⁹⁾(IAIS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제 3차 연례총회에서 네덜란드 보험감독청은 각 회원국에 대해서 “재보험에 대한 감독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고 장래 감독수준을 강화할 것인가 또는 완화할 것인가”를 설문지 방식으로 의견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응답결과가 이듬해 시드니 총회에서 공개되었는데, 要旨는 ① 앞으로 재보험자에 대한 감독은 지금보다 소폭이나마 더 엄격하게 될 것이며 ② 현행 국가간 감독수준·방법상의 차이는 더 좁혀질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그 차이가 모두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요약되고 있다.

위 설문지에 의하면 재보험에 대한 감독수준을 다음의 5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이를 다시 나누어서 세분류하고 있다¹⁰⁾.

9) 국제보험감독관협의회(IAIS) : 미국의 전미보험감독관협의회(NAIC)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하여 오던 국가들이 주축이 되어 1994년에 창립(83개 회원국). 보험감독기관간 상호협력 및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국제단체(사무국 스위스 바젤). 1999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제6차 총회 개최. 현안 이슈는 표준보험감독기준의 제정. 우리나라는 금융감독원이 창립회원자격으로 가입하고 있음.

10) 감독수준의 세분류 내용 : 1a 감독당국으로의 회계보고서 제출의무 없음. 1b 국내재보험자만이 연차회계보고서 제출의무 있음. 1c 국내보험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재보험자는 연차보고서 제출의무 있음. 1d 재보험자가 설정한 담보금액(collateral security)범위 내에서만 재보험크레딧 부여. 1e 해외재보험자의 경우 평가기관이 생산한 등급, 정보자료를 사용.

2a 재보험자 본·지점에서의 임점검사 실시. 2b 조회권한이 외국재보험자에게도 적용됨. 2c 원보험자가 재보험자를 선정하는데 제한이 있음. 2d 원보험자의 출재금액에 한도가 있음. 2e 국내재보험자에 한해서 사전승인이 요구됨(지급능력요건이 아님). 2f 모든 재보험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지급능력요건이 아님). 2g 국내재보험자는 원보험자와 똑같은 경영정보공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음.

3a 사업면허제도는 국가별로 결정됨. 3b 전세계적 단일면허제도는 국제성이 가장 큰 분야에 국한. 3c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무제한적 단일면허제도 적용. 3d 재보험자에 대한 감독원칙이 원보험자의 경우와 동일. 3e 재보험자에 대한 감독을 원보험회사의 출재분에 대해서만 감독하는 것으로 대체. 3f 재보험자에

0. 아무런 감독도 하지 않음.
1. 출재보험에 대해서만 감독
2. 국내보험자에 대해서 비공개정보(non-public information)의 제공을 요청할 권한이 감독당국에 있음.
3. 국내 보험자와 거래를 하는 모든 재보험자는 허가를 받아야 함.
4. 추가요건을 적용하여 통일된 면허를 원보험자 또는 재보험자에게 부여.

위 설문지에 대해 58개 국가가 응답을 하여온 바, 이의 집계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표 5> IAS 회원국 현재/미래 재보험 감독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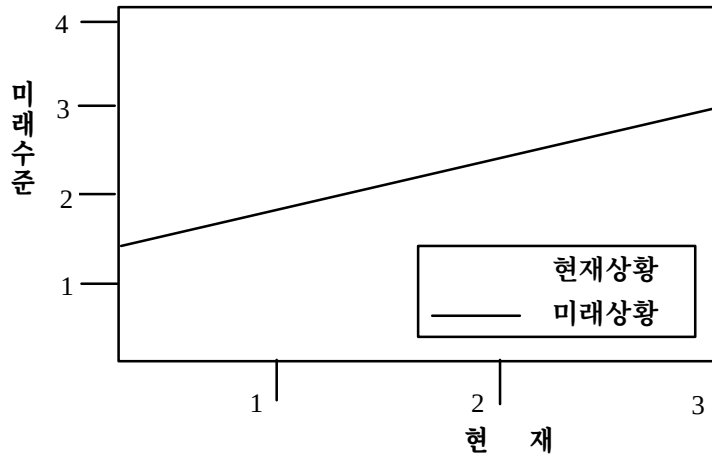
국가수	감 독 수 준					계	평균수준*
	0	1	2	3	4		
현 재	3	9	25	21	-	58	2.1
미 래	0	5	29	17	7	58	2.5

* : 최소자승법(OLS) 적용

자료 :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No.89, Oct. 1998

대한 감독을 원보험회사의 출재분 이외의 것으로 확대. 3g 재보험자의 지급능력 평가

<그림 3> IAS 회원국 재보험 감독수준 변천추이



자료 :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No.89, Oct. 1998

- ☐ 다수국가는 이미 재보험자에 대하여 얼마간의 감독을 행하고 있다. 감독을 전혀 안 하는 국가도 3개국이 된다.
- ☐ 현재 규제·감독을 안 하거나 제한적으로 하는 국가도 앞으로는 그 수준을 강화하되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 ☐ 따라서 앞으로의 감독수준은 현행 평균 2.1 수준에서 2.5 수준으로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 ☐ 재보험자에 대한 감독수준에 있어서 국가별로 차별화를 주장하는 국가나 감독기준의 통일화를 통해서 국가간 정합화를 이루자고 주장하는 국가 모두 공통된 현상은 자국의 현행 감독수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정되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것은 국가간 감독기준의 통일·정합화를 선호하는 국가일수록 더 강하다.

Ⅲ. ART 시장의 발전과 향후 전망

1. 市場概況

우리나라 보험시장에서 금융(재)보험(Finite Risk)이란 용어가 나온지 얼마 안 되는 것 같더니 지금은 ART란 용어가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세계 보험시장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최초 미국에서 만들어진 ART(Alternative Risk Transfer) 또는 ART솔루션(solution)이라 불리는 이 용어는 당초 기업이 캡티브 또는 Risk Retention Group¹¹⁾과 같은 自家保險의 메커니즘을 통하여 위험전가를 행하므로서 일반보험시장을 대신한다하여 대체보험시장 또는 대체위험전가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이 ART는 '80년대 중반 미국에서의 배상책임보험의 위기와 '90년대 초 자연재해로 인한 누적손해로 담보력 부족사태가 발생하고 일반보험시장에서 보험구득이 어려워지자 새로운 담보력 제공처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에 이 ART솔루션은 형태나 기능면에 있어 지금은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종래의 캡티브와 금융(재)보험은 물론 보험채권과 선물·옵션 등 보험 파생상품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 ART솔루션은 기업의 위험에 대해 조직과 기능면에서 전체와 일부의 관계를 중시하는 全体論的 접근방법에 기초하고 있다.¹²⁾ 기업전체 실적의 급격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위험(예 : 환위험, 화재위험)들을 하나

11) 미국은 '80년대 배상책임보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Federal Liability Risk Retention Act를 제정하여 보험대체시설로서 Risk Retention Group(RRG)과 Purchasing Group(PG)을 도입함. 이 Group은 특정산업 또는 특정 업종·권력에 속해 있는 회사들로 구성하여 상호책임주의에 입각해서 배상책임보험을 전업으로 하거나 공동으로 구입함. '98연말 현재 RRG는 전국에 70개 정도로 머물고 있고 PG는 669개로 증가추세에 있음. Sigma No.2 1999, p.14 재인용

12) Esther Baur, "Turning Art into Science", *Reactions*, 1999.9. p.81

의 포트폴리오로 구성·관리하고, 활동범위와 시간상으로 분산·다양화하여 충격을 흡수한다. 위험을 개별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전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다루기 때문에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고, 개별 위험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보유수준을 결정하며, 담보범위의 중복을 막고, 금년에 사용치 않은 담보력(capacity)을 다음 연도의 담보력으로 사용토록 하는 시간적 분산으로 담보력을 증대한다. 바로 이러한 점이 동종동질의 위험을 群으로 그룹화해서 위험을 분산하는 일반보험과 다른 점이다.

따라서 이 솔루션은 누구에게나 공통되는 그런 위험이 아니라 특정인에게만 고유한 특정위험을 처리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쓰인다. 또한 서로 관련이 없는 異種危險의 포괄담보, 다년간의 기간을 이용한 위험분산으로 일반보험에서의 부보불능위험도¹³⁾ 부분적으로 부보가능위험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위험인수주체는 반드시 원·재보험자일 필요는 없다.

이러한 솔루션은 현재 진행중에 있는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 서비스산업의 추가적 규제완화, 주주가치의 중요성 대두와 위험양태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그 성장 가능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2. 發展背景

ART솔루션의 발전은 일반보험시장에서의 담보제공력 및 보험가격 사이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담보제공력과 보험사이클의 변화는 새로운 상품개발을 촉진하기도 하고 늦추기도 한다. 위험환경과 경쟁환경의 변화, 경영진에 대한 주주의 영향력 증대 그리고 전통보험솔루션의 비효율성과 금융상품의 출현 등은 보험수요의 변화를 일으키고 또한 은행, 보험, 자

13) 보험이론상 부보불능위험(uninsurable risks)으로는 투기성 위험, 우연성 결여 위험, 사고발생 추정불가위험, 금전환가불가위험, 전쟁·핵·자연재해위험 등이 있음.

본시장 솔루션의 상호결합을 더욱 촉진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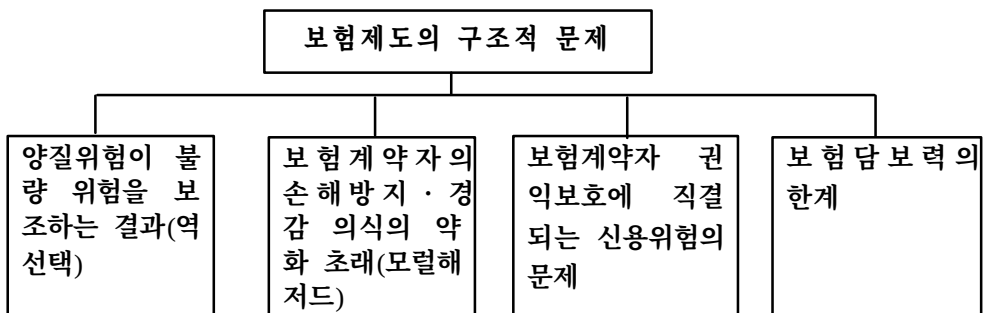
가. 위험환경 및 기업환경의 변화

위험환경변화와 관련하여 현재 많은 현대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은 종래 보험에서 담보되던 그러한 위험이 아니라 품질보증위험, 광고의 역효과위험 등과 같은 새로운 위험이다. 경쟁환경변화와 관련하여서는 많은 기업들이 생존전략의 하나로 구조조정을 취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어온 과거 년도에 발생한 장기미결제클레임 등의 제거방안마련이 큰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80 '90년대 구미국가에서 일어난 기업환경변화 중의 하나는 회사경영에 대한 주주의 영향력 증대이다. 일반주주 즉, 투자자들은 위험관리에 있어 어떤 위험에 기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는지에겐 관심이 없다. 지진으로 공장이 파손되었다든지 외환위기로 소득이 줄었다든지 결합 있는 상품의 회수 조치로 회사 이미지가 손상을 입었다든지 등에는 큰 관심이 없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실을 야기시킨 원인은 묻지않고 결과만 묻기 때문이다. 투자자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위험자본을 제공하는 대가로 그에 상응하는 소득이 있기만을 기대할 뿐이다. 주주이익의 증대만이 최대의 관심사이다.

나. 일반솔루션의 한계

<그림 4>



보험가격은 평균위험에 기초하여 만들어 지기 때문에 양질의 위험은 가격책정에 손해를 볼 수 있다. 이에 양질의 위험은 더 이상의 불량위험 보조를 피하고 있고 그 대신 자가보험 쪽으로 선회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위험전가의 대가와 예상손해와의 괴리가 크다는 것은 세계 어느 보험시장에서나 공통된 현상이고 일부 학자는 이를 보험계약 당사자간의 정보비대칭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양질위험이 불량위험을 보조토록 하는 것이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다.

보험은 손해방지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하겠다하는 보험계약자의 의지를 약화시키고 그 만큼 보험자는 모럴해저드(moral hazard)를 감안하여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자가보험 또는 기금 등 상당수의 ART솔루션은 이러한 모럴해저드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하고 있다.

보험은 또한 신용위험을 안고 있다. 원·재보험자의 지급능력이 충분치 못하므로써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전액 지급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이 신용위험은 90년대 초 자연재해의 빈발 등으로 세계보험시장에서 다수의 원·재보험자가 파산한 사례에서 실증되고 있다.

대형기업은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거대위험에 대해서 보험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담보범위상의 갭을 감수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세계보험시장의 담보력 부족에 주로 기인한다. ART는 이러한 담보력 부족에 또다른 담보력 제공처로 발돋움하고 있다.

다. 세계금융시장의 발전

지난 20년간 세계금융시장은 불확실성이 증대됨과 동시에 새로운 금융분석이론의 출현으로 금리위험, 환율위험, 물가변동위험 등을 다루는 새로운 상품이 등장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선물, 옵션, 스왑 등이다. 이들은 세계보험산업에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내고 있다. 전통적인 위험보장기능

에서 고객의 자산 및 부채관리, 신용상태개선 및 수익보장의 기능까지 발휘하는 상품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것은 금융·자본시장에서의 혁신적 위험관리개념이 전통적 보험위험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인식의 확산에서도 찾을 수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ART상품의 개발목표는 첫째 현존하는 위험전가 시설의 보완기능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둘째 피보험위험의 범위를 넓히며, 셋째 자본시장을 통한 추가 담보력의 생산으로 요약될 수 있다. 효율성 증대를 통한 기존시설의 보완은 손해진전(보험금실적)상황에 자신이 직접 참여하고 신용위험을 제거하며 초과·중복보험을 극소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피보험위험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것으로는 포트폴리오와 시간의 분산을 생각할 수 있고, 담보력을 늘리는 방안으로서는 새로운 담보력 제공처로서 금융시장을 꼽을 수 있겠다.

Swiss Re사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96년도 ART상품의 보험료는 세계기업성 손해보험료의 1/4에 해당하는 500 6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¹⁴⁾

3. 主要形態

ART의 주요 형태로는 캡티브, ART솔루션, 보험채권과 보험파생상품 등이 있다. 캡티브는 母會社가 갖고 있는 특정위험의 전가와 관련하여 원·재보험자를 대체하는 시설이고, ART솔루션은 보험상품에 은행·증권 상품의 원리를 접목시킨 일종의 금융형 상품이다. 보험채권과 보험파생상품은

14) Jim Bannister, "Alternative Risk Transfer, Changing Insurance Market" *Japan Insurance News*, Nov./ Dec. 1997. 영국의 Financial Times에 의하면 최근 년도의 ART시장 보험료는 1,000억 달러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 그 규모가 4배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보험위험을 증권화한 상품으로 위험인수자가 자본시장에서의 투자자이다. 여기서는 이들 네 가지 형태에 대해서 특징적인 사항을 살펴보고 아울러 일반 보험과의 차이점을 개관해 보고자 한다.

가. 캡티브

일반적으로 캡티브(captive)는 보험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母會社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자로 정의되고 있다. 당초 캡티브의 설립목적은 사고 발생 빈도는 높으나 회사 스스로 보유 가능한 모회사의 위험을 코스트面에서 효율적인 自家保險으로 처리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배상책임 보험위기와 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으로 보험시장에서 보험구득이 어려워지자, 이들 특정위험에 대한 전문(재)보험자 아니면 자본시장에서의 추가담보력 확보를 위한 금융매개시설로 일부 변모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캡티브가 원보험 자라기보다는 재보험자로 더 많이 인식되고 있다. 이는 캡티브 모회사 위험을 원보사(fronter)가 우선 인수토록 하고, 재보험계약으로 다시 캡티브(설립여건이 좋은 버뮤다 등에 소재)에 출재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캡티브가 수재한 위험은 다시 전업재보험자에 出再再되기도 한다.

'60년대 및 '70년대 초 캡티브의 가장 큰 이점은 域外 설립지(버뮤다 등)로서 당국으로부터 납입보험료와 준비금에 대해서 손비인정을 받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의 상당수의 주정부도 캡티브의 실체를 인정하여 캡티브의 自州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있고 아울러 일정 요건¹⁵⁾을 갖추는 경

15) 캡티브가 보유하고 있는 위험중 상당량(예:30%)이 모회사가 아닌 제3자의 위험 물건일 것. 유럽에서는 상당량의 위험 전가가 이루어지고 지급된 보험료가 언더라이팅 관점에서 인식되는 금액임이 증명되어야 함. 반대로 캡티브가 실현한 이익금이 모회사 소재국가의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도 있음.

우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어 세제혜택의 이점은 두 번째 고려 사항이 되고 있다.

세제혜택 이외에 캡티브의 이점으로는 투자이익의 보험금 지급재원으로 활용, 자금흐름과 투자정책 등에 영향력 행사 그리고 일반 재보험시장으로의 직접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전세계에는 4,000개의 캡티브가 있다.¹⁶⁾ 이중 3,000개사가 일개 그룹 사에 소속되어 있는 單一母會社 캡티브이다. 특정산업(오일, 화공약품, 제약회사 등) 내의 다수 회사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그룹 캡티브(풀과 유사)가 '70 '80년대에 미국에서 급성장을 보였고, 근래에는 캡티브의 실제 설립보다는 시설임차방식으로 「rent-a-captive」 등이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에는 보험 위험의 자본시장으로의 전가를 주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회사(캡티브)」(SPV : Special Purpose Vehicle)가 설립되고 있다.

이들 캡티브가 거두어들이는 연간 수입보험료는 '97년도의 경우 약 21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전세계 기업보험료 3,650 달러의 6%에 상당한다. 최근 들어 캡티브 설립이 둔화되고는 있으나 보험료 증가율은 연 5%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표 6> 에서와 같이 캡티브의 절반 이상이 미국 기업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영국과 스웨덴의 캡티브가 자국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보험료 기준)을 보이고 있음은 흥미롭다.

16) 이 중 1/3이 버뮤다에 소재함. 유럽에는 Guernsey,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1999년 부터는 로이즈 내에서도 캡티브 설립이 가능함. 로이즈 캡티브는 로이즈가 세계 60개국에서 원보험 면허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리함.

<표 6> 국별 캡티브 수 및 시장 비중 (1997)

(단위 : 개, 10억달러, %)

	캡티브		손해보험료		보험료 10억달러당 캡티브 수
	수	점유율	금액	점유율	
미 국	2,064	56.8	376.0	42.0	5.5
영 국	591	16.2	56.5	6.3	10.5
캐나다	147	4.0	27.0	3.0	5.4
스웨덴	144	3.1	5.2	0.6	21.8
프랑스	81	2.2	40.5	4.5	2.0
일 본	66	1.8	100.8	11.3	0.7

자료 : Swiss Re, Sigma No.2, 1999, p.17 (일부 재가공)

전술한 바와 같이 캡티브의 설립은 세계 손해보험시장에서의 보험가격 및 담보력 추이와 상관 관계가 있고 개별 리스크 관리에 있어 일반 보험시장에 대한 하나의 대체시장으로 인식되고 있음은 사실이다. 따라서 ART시장 진입에 있어 캡티브가 첫단계로 꼽히고 있고, 총체적(holistic) 위험관리 프로그램에서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가 없다.

나. ART 솔루션

ART솔루션에는 책임한정(Finite Risk) 솔루션, MMP(Multi-year/ Multi-line Products), MTP(Multi-trigger Products), Contingent Capital등과 같은 솔루션이 있는 바, 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책임한정

일부에서 금융보험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책임한정 (재)보험은 보험계약자의 보험위험 또는 금리위험 등과 같은 비보험 위험을 한정해서 담보하는 것으로서 특정 년도의 손해경험을 기간적(수년)으로 분산해서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이다. 이는 대수의 법칙을 이용하여 동질적 위험군 내에서 손해를 분산하는 일반보험과 비교가 된다. 이 솔루션의 특징적인 사항은 개별

위험의 기간적 분산·(재)보험자가 부담하는 총누계책임한도액을 미리 설정하여 有限責任化·보험가격 결정에 현금의 시간적 가치를 반영(현금할인)·수재사(또는 원보사) 이익시현시 출재사(또는 계약자)와 공유, 손해 발생시 수재사 보전 등으로 요약된다.

이 솔루션의 주요 계약형태로는 Loss Portfolio Transfers(LPT), Adverse Development Covers(ADC), Finite Quota Shares(FQS) 및 Spread Loss Treaties(SLT) 등이 있다. 이들 계약의 세부내용은 다음 장에서 다루어 진다.

2) MMP(Multi-year / Multi-line Products)

MMP는 다수의 보험종목 또는 다수의 보험/비보험 위험을 하나의 보험 프로그램으로 결합해서 담보하는 솔루션으로서 위험의 총체적 접근방법에 기초하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담보제공자(원·재보험자)의 보상한도와 계약자의 자기부담액은 일반 보험에서와 같이 매 위험별 또는 연간 베이스로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계약기간(수년)과 전담보 위험에 걸쳐 합계되는 총누계한도액으로 설정된다. 즉, 여러 가지 위험을 결합하므로써 분산하는 것 이외에 시간적으로도 위험분산을 꾀하므로써 효율을 높인다. 상당량의 위험전가를 기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Finite Risk 솔루션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MMP의 이점으로는 위험에 참가하는 보험자와 브로커의 수가 줄기 때문에 계약체결에 따른 협상·조정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고, 계약기간의 장기로 매년 갱신을 해야하는 번거러움을 피할 수 있다. 즉, 위험관리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보험가격등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다. 이 솔루션은 또한 고객주문에 따라 특별히 설계되기 때문에 위험담보의 초과·중복 그리고 갭을 없앨 수 있다. 그럼에도 이 MMP는 실무상 여러 가지 문제를 안

고 있다. 주문형 상품이기에 대상 리스크프로필을 모두 파악·평가하는데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 하나 또는 극히 적은 수의 (재)보험자와의 계약체결이기 때문에 신용위험의 문제가 있다. 또한 다수의 위험을 패키지화하여 담보하기 때문에 담보력이 부족할 수가 있고, 회계원칙과 세액공제의 적용이 불분명하다는 점이 있다.

3) MTP(Multi-Trigger Products)

MMP와 마찬가지로 MTP도 全体論的 위험접근방법에 기초한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클레임 지급이 있으려면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제 1요건은 계약기간 중 보험사고(예 : 화재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제 2요건은 비보험사고(예 : 물가폭등)가 발생해야 한다. 보험자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율이 낮아지고, 그 만큼 싼 요율을 계약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담보범위가 두 가지 요건으로 한정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보험/ 비보험 사고로 인한 손해흡수가 가능할 정도의 재무준비가 갖추어져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재력이 탄탄치 못한 회사가 보험료 절감을 목적으로 이 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위험하다. 문제점은 MMP의 경우와 유사하다. 상품설계과정에서 높은 비용이 소요되고, 신용위험의 문제가 있으며 세법 및 회계원칙의 적용에 불분명한 점이 있다.

실제로 '94년도에 이 솔루션은 재보험커버로서 원보험회사로부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당시 Northridge지진으로 원보험회사는 100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고 동시에 채권가격의 하락으로 200억 달러의 자본손실을 보았기 때문이다. 물가, 환율, 금리 변동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 회사는 이 상품이 유리하다.

4) Contingent Capital(CC)

자본시장으로부터의 ART솔루션 중 또 하나의 대안은 사고후 보험손실의 보전을 위해 자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솔루션은 은행거래에 있어 대출약정과 유사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대출약정이 계약자의 재무건전성 정도에 연결되어 있으나, 이 상품은 증권상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미리 약정한 조건으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이 솔루션의 주된 고객은 원보험회사이다. 이는 거대사고 발생 이후 감독기관이 정하고 있는 솔벤시 요건을 충족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 솔루션으로 금융분야가 보험권역의 전면에 나서는 셈이 된다. 즉, 자금제공자는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위험을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복잡하기는 하나 CC의 또 다른 형태는 주식가격 뿐만 아니라 보험사고에 연결된 풋옵션(put option)을 구입하는 것이다. 즉, 증권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주식가격이 사전에 정한 금액을 하회하는 경우 회사는 옵션을 행사할 수 있고 약정된 가격으로 추가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 CC상품은 일반보험과 마찬가지로 구입자가 제공자의 신용위험(지급불능위험)을 갖는다. 이 상품은 또한 아주 드물게 발생하기는 하나 한번 발생했다하면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게 하는 위험을 헷징하는데 유효하다. 또한 여러 가지 다른 솔루션과는 달리 이 CC거래는 손해실적을 기간 적으로 분산하여 평준화하지 않는다. 손해 액은 한번에 전액 손익계산서에 반영된다. 이 CC거래는 결국 대형사고 이후 운전자금의 부족을 막고 회사가동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상품이라 할 수 있다.

다. 보험위험의 증권화

일반 보험시장에서 구득할 수 있는 자연재해 담보는 발생가능 최대금액에 비해서 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 ISO의 컴퓨터 모델링 보고에 의하면 미국은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액으로 연간 1,000억 달러를 추정하고 있다. 현재 미국 손보사의 계약자잉여금이 3,335억원 이라고 볼때 한두번의 재해발생으로 업계가 몰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보험자, 재보험자 및 투자은행들은 이들 위험담보를 위한 커패스티를 추가로 구득하기 위해 자연재해위험 포트폴리오의 증권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물론 보험위험의 증권화는 자연재해위험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일반 보험시장에서의 담보부족이 자연재해 부문에서 특히 심하기 때문에 이 분야부터 시작하는 것에 불과하다.

증권화 모델로서 캘리포니아 지진당국(CEA:California Earthquake Authority)이 발행하는 지진위험채권(ERB : Earthquake Risk Bond)이 있다. 이 채권발행 프로그램에는 아래 <표 7>에서와 같이 전세계의 원·재보험자는 물론 금융시장도 참여하여 몇 개의 층(layer)을 이룬다. 이 중 다섯 번째 층이 자본시장에서의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다.

<표 7> 캘리포니아 지진위험 담보방식
(단위 : 10억달러)

10.5		초과액 담보(contingent excess) 원보험자
8.5		공동참여 : 20억불
7		지진위험채권 : 15억달러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6		주정부 수익채권(revenue bond)*
4		재보험(비비레)레이어(layer) : 20억불
1		초과액담보(contingent excess) 원보험자 공동참여 : 30억불
0		원보험자 공동참여 : 10억불

* : 수익채권(revenue bond)은 채권발행사의 전반적인 재력과 공신력에 근거하여 발행되는 일반 보증채권과 달리 어떤 특정한 수익, 즉 특정 프로젝트나 세수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의해서만 상환이 보증되는 채권임. 이는 주로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등이 상·하수도, 발전소 및 천연가스 프로젝트 등에 대한 금융을 위해 발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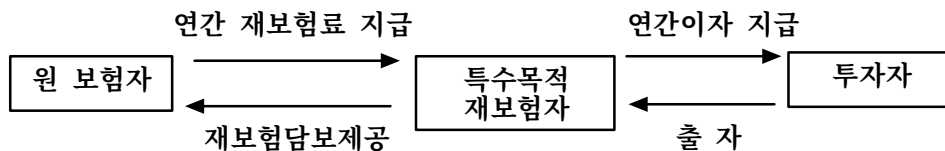
자료 : Swiss Re, Sigma No.5, 1996

이 채권의 만기는 10년이고 위험담보가 있기 때문에 여타 일반 공채보다 수익률이 높다. 위험담보기간 중(발행일로부터 최초 4개년) 70억 달러 이상의 지진손해가 있는 경우 잔여기간의 수익률은 낮아진다. 만기시 원금 상환은 손해발생 유무에 관계없이 보장된다. 다섯 번째 레이어인 15억 달러의 담보력을 얻기 위하여는 35억 달러 상당의 ERB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중 20억 달러는 만기시 원금상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공채기금으로 편입되고 나머지 15억 달러는 상기 CEA 프로그램의 위험자본으로 사용된다.

보험위험의 증권화에 대해서 또 다른 一例를 들면 아래와 같다.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추가담보를 요하는 원보험자가 특수목적 재보험사(SPV)를 설립해서 재보험계약을 체결한다.

이 특수목적 재보험사는 조달된 자금과 원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재보험

료를 안정적으로 자금운용해서 자연재해에 대한 재보험 담보를 원보험자에 제공한다. 일명 「Act of God」 Bond라고 불리는 이 고수익 채권에서 만기일까지 자연재해가 발생치 않으면 투자자는 고율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 받을 수 있으나,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손해가 일정금액 이상을 달할 경우는 상품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원금과 이자에 손해를 볼 수 있다¹⁷⁾. 자연재해의 증권화는 원보험자, 재보험자 그리고 투자은행이 할 수 있다. 특수목적 재보험사는 원보험사에 재보험증권을 발급하는데, 이는 감독 또는 세금감면 목적으로 이 거래가 재보험 형태를 띠고 있음을 확실히 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보험위험의 증권화 장점은 자본시장을 이용하여 담보력을 늘릴 수 있고 장기계약으로 위험헷지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증권화는 재보험 차원에서 재보험의 대체 또는 보완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앞으로는 보험위험을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금융보험적 투자상품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투자상품은 순수금융위험과는 무관하고 포트폴리오의 분산효과가 뚜렷하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실제로 최근 도쿄 디즈니랜드의 소유자인 Oriental Land사가 지진위험에 대한 대비책으로 케이만 소재 특수목적재보험사를 통해 2억불 상당의 채권(기간 5년)을 발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7) John J. Koller, "Making the Most of the Capital Markets", *Risk Management*, August 1999, p.24

라. 보험파생상품

1) 보험옵션

자본시장에서의 상품을 이용하여 보험위험을 통제하고자 하는 첫 번째 시도는 '92년말 미국의 CBOT¹⁸⁾에서 자연재해 위험을 대상으로 한 선물과 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의 개발에서 이루어졌다. 이 파생상품은 특정지수(실적)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상품이다. 즉, 손해실적에 기초해서 만들어지는 특정지수와 계약자의 실제 실적과의 상관관계에 따라 보험 담보의 효과성이 결정되는 상품이다. 실제로 CBOT지수는 보험자의 전체 캐로스(Cat. Loss)에 기초하고, BCX지수는 보험자의 주택소유자 보험증권에서의 날씨관련 손해액에 기초하고 있다.

시카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표적인 상품은 손해사정업체인 PCS(Property Claims Services)사가 매일 제공하는 손해지수에 기초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담보 보험 콜옵션(Call Option)이다.

이 옵션은 지수가 사전에 정한 수준(strike price)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권리행사 가격에서 매입권리를 행사한다. 이 거래는 몇몇 층(layer)으로 나누어서 담보한다는 점에서 XOL 커버와 유사하나, XOL이 출재사의 위험 포트폴리오(특정위험)를 담보하고, 옵션거래가 불특정 다수 위험의 평균 포트폴리오를 담보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와 같이 기초위험의 차이로 이 거래가 일반 (재)보험 솔루션의 보완 수단은 될지언정 대체수단은 될 수 없고, 실제 거래량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8) Catastrophe에 대한 손해지수(PCS지수) 관련 선물과 옵션은 1992년 이래 chicago Board of Trade(CBOT)에서 판매되어오고, 1997년 Bermuda Commodities Exchange(BCX)에서도 소개됨. 보험파생상품의 거래실적은 아직 미미하고 초기단계에 있음. 그나마 CBOT에서 판매되는 상품도 위험대처에 있어 아직은 그 효용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 있음.

한편, 보험 관련지수는 손해액(또는 사고발생율)에 기초하는 것 이외에 온도, 강우량, 우기일수 등에 기초해서 만들어 질 수 있고, 이로써 기후에 영향을 받는 에너지회사(냉난방업체등), 건설회사, 식료품/ 주류업자, 레저기업(수영장, 산악철도, 테마공원, 스포츠상점등)은 소득상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풋옵션을 매입하는 등 보험파생상품을 이용하고 있다.¹⁹⁾

자연재해위험의 헷지와 관련하여 PCS Call Spread²⁰⁾를 일례로 들어본다. (재)보험자는 미국 서해안의 지진위험을 줄이기 위해 선물시장에서 200/ 250 Western Annual Call Spread를 매입한다. 200 Call Option을 매입하고 동시에 250 Call Option을 매도함으로써 200억 달러(지수1=1억달러)에서 250억 달러까지의 시장 손해를 커버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재)보험자는 자연재해 위험에 대한 커버를 설계해서 낮은 옵션 구입비용(option premium)으로 이 커버를 매입 할 수 있다.

2) 보험스왑

스왑거래는 사전에 정해진 가격 및 기간에 둘 이상의 당사자가 자금을 보다 유리하게 조달하기 위해 상호간에 부채를 교환함으로써 위험을 회피하려는 금융기법이다²¹⁾.

-
- 19) 온도관련 풋옵션은 온도가 일정 지수이하로 내려가는 경우 옵션 매입자는 미리 정한 금액으로 팔 권리를 가짐. 보상금액은 일정수준 이하로 지수가 떨어지는 정도(온도단위)에 기초하여 계산함. 겨울이 추울수록 지수는 올라가고, 더울수록 낮아짐. 기후파생상품은 지난 2년간 미국 시카고시장에서 2천여건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거래대금도 30억 달러에 달함. 중앙일보, 1999. 9. 28.
- 20) 원래 스프레드는 현물가격의 상승이나 하락보다는 통상 어느 시장에서 동일한 대상 상품의 두 개의 선물간 가격 차이를 말함. 즉, 거래대상 상품간의 가격차이(스프레드)를 이용하여 이득을 얻고자 하는 거래로서 이에선 상품간 스프레드, 시장간 스프레드 그리고 결제월간 스프레드의 세 가지가 있음.
- 21) 스왑에는 금리스왑, 베이스스왑, 통화스왑등이 있는데, 이들 거래는 금융시장의 세계적인 통합화, 금융의 증권화 및 장부외거래의 진전 등으로 활기를 띠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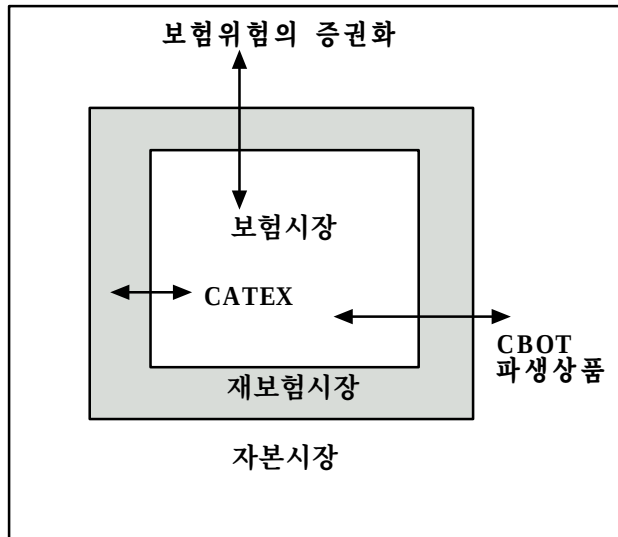
보험부문에 있어서는 '96년 10월 뉴욕에서 개장된 CATEX(Catastrophe Risk Exchange)를 들 수 있다. 이 거래소에서 원·재보험자, 보험브로커, 캡티브 등 위험인수·취급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지역·손해형태별로 서로 다른 자연재해위험을 패키지 형태로 상호교환하여 다변화를 기한다. 멕시코 연안의 허리케인, 중서부 지역의 토네이도, 캘리포니아의 지진, 아이오와의 우박 등이 교환의 대상이다. 이 거래는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의 교환이 아니라 현금흐름의 교환이기 때문에 클레임 처리는 개별위험의 인수자가 담당하고, 또한 위험의 교환이기 때문에 보험담보의 증대를 가져오는 옵션거래와는 차이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 자연재해위험을 담보하는 데는 전통적인 일반(재)보험시설 이외에 보험위험의 증권화 그리고 CATEX, CBOT 市場에서의 先物·옵션·스왑 등 보험파생상품이 이용되고 있다. 이는 보험위험에 자본시장의 참여가 시작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일반 대재해 재보험과 상기한 증권화/ 옵션거래 등과의 근본적 차이점은 소위 베이스 리스크(basis risk)유무 여부에 있다. 특히 옵션거래는 개별 위험요소의 고려 없이 다수의 위험 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통계해서 지수화 하기 때문에 개별위험의 손해경험과 괴리가 있을 수 있고 따라서 개별 보험포트폴리오의 헷징 효과는 평균 대표 포트폴리오와의 상관관계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대재해담보재보험(비비레) 등 일반(재)보험과 ART솔루션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표 8>에서와 같이 요약된다.

<표 8> 일반(재)보험과 ART솔루션과의 공통점/차이점

<그림 5> 보험시장과 자본시장



자료 : Swiss Re, Sigma No.5, 1996

4. 국가별 ART 市場의 展望

가. 미 국

미국은 ART솔루션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특히 생산물 배상책임, 근로자재해보상, 환경배상책임 등의 배상책임보험 문제가 ART솔루션의 개발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고, 실제로 지난 20년간 여러 가지 형태의 대체보험시설이 성장·발전하여 왔다. 설사 일반(재)보험시장에서 유리한 가격과 조건으로 보험 담보구득이 가능하더라도 대체보험시장의 현행 성장추세는 크게 위축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최근 들어 미국의 캡티브 시장은 저성장 상태에 있다. 중소기업은 rent-a-captive를 이용하고 기존 캡티브는 그들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미국의 많은 州들은 캡티브에 관한 규제조건을 완화해서 自州에서의 設立을 권유하고 있다. 한편, Multi-line/ Multi-year 등의 결합상품이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즉, 위험관리 업무의 기업내 또는 그룹내 통합필요성 증대²²⁾로 危險限定(finite)의 준거를 내에서 전통적 위험전가방식과 대체적 위험재무방식의 결합상품이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에서 보험위험의 증권화는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험채권·보험파생상품은 시카고·버뮤다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자거래의 CATEX(Catastrophe Risk Exchange)거래소가 최근 년도에 뉴욕과 버뮤다에서 개장했다. 앞으로 많은 위험주체들이 자신들의 위험관리문제를 상당부분 자본시장에서 해결책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나. 유 럽

유럽시장에서 대체위험파이낸싱 솔루션은 국가마다 그 발전 정도가 다르다. 영국에서는 어느 정도 발전이 있으나 그 외의 국가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 그럼에도 역내 세계적인 대 그룹사는 범세계적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비용·효율면에 비교우위의 위험관리정책을 추구하고 그 일환으로 파이낸싱 솔루션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유럽은 기업자금조달에 있어 미국시장보다 자본시장의 의존도가 덜하고 그 결과 경영에 대한 주주압력도 약하며 은닉준비금(hidden reserve)²³⁾을 허용하는 회계처리관행 등으로

22) 일반적으로 기업/그룹의 업무분장상 재무부서는 이자율, 환율 및 물가변동 위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고 위험관리부서는 화재, 배상책임, 기업휴지등과 같은 언더라이팅 위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음. 이러한 위험관리업무의 양분화는 기업/그룹의 총체적 위험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조직·기능면에 있어 전체와 일부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전체론적 위험관리(holistic risk management)가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23) 은닉준비금(Hidden Reserve) : 자산가치를 저평가(understatement)하거나 부채를 일괄 계상(overaccrual)하는 등의 회계처리는 기업의 순가치를 저평가하게 되는 결과를 낳으며, 이러한 저평가를 은닉준비금이라고 함. 이러한 은닉준비금은 궁극적으로 숨겨진 자산가치가 향후에 현금화될 때 기업이익이 증폭되는 효과를 가져다 줌.

ART 성장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캡티브 성장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캡티브 숫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잠재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일부는 보험가격 자유화, 보험시장의 규제완화 그리고 세금공제대상 준비금 범위의 축소 등을 들어 캡티브 존재에 회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유럽은 유로貨 시행으로 미국 다음으로 큰 단일자본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그에 따라 자본시장의 자유화 폭이 넓어지면서 주주의 압력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험관리문화는 변할 것이고, 그에 부응하여 Finite 솔루션 등 결합상품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 일본 / 아시아 국가

아시아 국가에서의 ART분야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 아시아 국가에서 母會社 소유 캡티브는 큰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에서조차 위험관리기능은 실제적이지 못하고 행정적 업무로 치우치는 경향에 있다. 특히 대그룹사와 손해보험회사간에 상호의존도가 심하고, 기업 보험의 상당부분이 이들 그룹사에서 얻어지고 있어 경쟁력 향상 압박에 부응할 수 있는 ART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아직 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시아 국가의 경우 최근의 경제·금융위기와 시장 개방체제는 기업위험관리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고, 보다 전문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방안을 찾게 하고 있다. 시장 구조조정으로 보험금포트폴리오이전(LPT)등 Finite형태의 (재)보험 방식이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보험위험의 자본시장으로의 전가는 일본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몇몇 대형 손해보험사가 지진과 태풍위험을 자본시장에 출재함으로써 자연재해위험에 대한 담보력을 자본시장에서 일부 구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시아 시장에서 ART시장의 발전은 무엇보다 효율적인 규제의 틀 내에

서 ART상품에 대한 규제당국의 지원(세제 포함), 회계기준의 신축적 운용, 건전성 규제의 적용, 용이한 금융·자본시장으로의 접근과 자유로운 자본 이동, 초현대적 원거리 통신시설 구축, 고도의 보험전문성과 기술·지식 등에 의해서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²⁴⁾

24) Gerling Global Financial Products사(뉴욕)의 Managing Director Suresh Krishnan이 Asia Insurance Review지가 최근 개최한 「Conference on Alternative Risk Transfer : Is Asia Ready?」 제하의 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의 요지임.

IV. 責任限定 再保險

전술한 바와 같이 ART 솔루션에는 Finite Risk, MMP, MTP, Contingent Capital 등이 있는 바, 이 중 Finite Risk Reinsurance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市場概況 및 生成背景

가. 시장개황

책임한정재보험(Finite Risk Reinsurance ; 이하 「Finite 재보험」 또는 「Finite Risk재보험」이라 함)²⁵⁾ 대해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가지 틀림없는 사실은 이 방식은 위험전가기능과 리스크파이낸싱²⁶⁾(위험재무)기능을 결합해서 만든 하나의 대체적 재보험방식이라는 점이다.

이 Finite 재보험의 생성은 지난 20년간 시장진입장벽 완화와 시장규제완화로 인한 경쟁환경의 변화, 측정이 어려운 언더라이팅 위험의 출현 그리고 감독측면에서 건전성 감독과 공시제도의 강화 등의 세계적 추세에 대응해서 비용 효과적인 재보험방안 그리고 효율적인 자산운용·배분으로 영업

25) Financial Re.와 Finite Risk Re.라는 용어는 상당부분 같은 의미로 교차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실상 이 두 개의 재보험방식은 재보험자의 책임이 제한되고 보험료 결정에 현금의 시간적 가치가 반영되는 등 금융적 요소가 강하여 금융(재)보험으로 번역하고 있음. 그러나 여기서는 Finite Risk Re.를 금융재보험으로 번역치 아니하고 원어를 그냥 사용해서 「Finite 재보험」 또는 「Finite Risk 재보험」으로 표시하여 순수 금융재보험과 구분 하고자 함. '90년대 초까지 금융재보험은 언더라이팅 위험 담보가 중시되지 않았으나 지금은 동 위험담보가 Finite 재보험의 필수적 구성요소이기 때문임.

26) 리스크파이낸싱(risk financing)은 보험금지급 財源의 利用을 의미하며, 내부기금 재원을 이용하는 자가보험 프로그램과 외부기금 재원을 이용하는 위험전가 프로그램이 있음. 현금의 시간적 가치이용을 중시하는 위험통제의 한 형태임.

실적의 평준화를 기할 수 있는 재보험방안을 추구하는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이 방식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재보험자가 위험을 제한(limited/ finite)해서 인수한다는 점이다. 즉, 재보험자는 손해규모에 관계없이 사전에 정한 누계책임액 한도내에서만 지급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재보험 수익 마진도 아주 낮다. 또한 출재사는 동일 위험물건에서 두가지 위험을 전가하는데, 하나는 실제보험금이 예정보험금보다 클지도 모르는 언더라이팅위험이고, 다른 하나는 보험금이 조기에 지급됨으로서 투자수익의 감소를 가져오는 보험금조기지급위험이다. 이는 재보험자의 책임을 한정함이 없이 언더라이팅위험만을 전가하는 일반재보험과는 차이가 있다.

Finite 재보험 솔루션의 또 다른 특징은 ① 계약기간이 3 10년이기 때문에 재보험 가격 및 조건 등의 결정을 보다 신축성 있게 할 수 있고 보험금을 기간적으로 배분 및 분산 가능하며, ② 「재보험책임의 제한적 인수」에 대한 반대 급부격으로 계약기간중 이익시현시 이익의 상당부분을 출재사에 반환(적자시현시에는 손해액만큼 출재사가 수재사를 보전)하고, ③ 재보험 가격결정에 장래의 투자수익을 반영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금융 또는 Finite 시설을 i)재보험기능 ii)예탁기능 iii)파이낸싱기능의 3대 기능의 차원에서 파악하는 경우도 있다.²⁷⁾ 재보험기능에서의 특성은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한 보험료 책정, 보험사고시 약정보험금의 지급 약속, 재보험자의 위험인수 제한가능, 통상 1년의 계약 그리고 지급한 보험금을 사후에 보전한다는 것을 약속하는 일이 없을 것 등이 있다.

예탁기능의 특성으로는 위험보험료보다 훨씬 큰 금액의 보험료를 사전에

27)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ART-Financial Reinsurance : The Australian Regulator's Perspective, Australian Forum" *Asia Insurance Review*, 1999.

재보험자에게 지급하고 재보험자는 클레임 발생시 또는 계약 종료시 동 금액을 출재사에 환급, 예탁금에 대한 이자지급(직·간접), 사고발생시 보험금 지급, 재보험자의 위험인수 제한가능 그리고 상호합의에 의한 계약기간의 설정 등을 들 수 있다.

파이낸싱기능의 특성으로는 사고발생시 재보험자에 의한 선지급, 사후 동 지급액의 회수, 저렴한 시설비용, 재보험자의 극히 제한적인 위험인수(자금대출의 성격), 이자부과, 필요시 근저당 설정 등이 있다. 대부분의 금융·Finite시설은 이 세 가지 기능이 부분적으로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일부 솔루션은 세금 또는 감독기준의 회피 목적으로 재보험기능의 요소를 의도적으로 첨가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

Finite 재보험의 이점으로는 보험금과 보험료의 기간적 분산으로 언더라이팅실적의 안정화와 재무관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원보험자의 보유증대 그리고 이익의 환급으로 재보험료 절감이 가능하며, 당사자간의 합의여하에 따라 담보범위의 확대가 상당부분 가능하고, 보험자로 하여금 자본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재보험자와의 장기적 유대관계로 차후 전략적 제휴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항과 관련하여 일반재보험과 finite 재보험과의 내용 비교를 정리해 보면 <표 9>와 같다.

<표 9> 일반재보험과 Finite재보험 비교표

구 분	일 반 재 보 험	Finite 재보험
책임한도액	일반적으로 건당 책임한도액은 설정되어 있으나 계약기간 동안 총책임한도액은 무한대	재보험 계약기간 동안 총누계 책임액을 사전에 미리 합의, 제한
담보위험	· 언더라이팅 위험	· 언더라이팅 위험 · 타이밍 위험(보험금 조기 지급 위험) · 금리/ 환위험 등
소급담보가능여부	불가	가능
계약기간	1년계약	장기계약 (3 ~ 10년)
재 보 험 계약조건	종목별로 특약조건 및 합의내용들이 정형화되어 있음.	계약조건이 정형화 되어있지 않고, 계약 당사자 상호 합의 하에 탄력적으로 결정됨
영업수지	· 수지불균등 (영업손실 보전 또는 이익 환원이 없음)	· 수지균등
재보험 목적	장래 불확실 위험에 대한 위험분산으로 영업안정도모	· 영업실적 안정화 · 담보력 / 보유증대 · 재무구조개선 · 비용절감효과
재보험자 이익의 원천	재보험 언더라이팅 성패에 따라 손실 또는 이익 실현	재보험 계약인수 및 관리에 따른 경비보전

나. 생성배경

Finite 재보험의 생성배경은 ART시장의 발전배경과 맥을 같이한다. 여기서는 주요한 사실만을 다시 기술하고 재보험담보에 특별히 관계되는 사항을 추가하고자 한다. Finite 재보험의 생성은 '80년대 중반 이후 배상책임보험의 위기와 자연재해위험과 관련된 보험커버 구득 불가에서 비롯된다. 특히 거액의 배상책임클레임으로부터 보호의 필요성은 있으나 보험커버의 구득 불능으로 대체커버의 개발이 요구되고 여기서 배상책임클레임의 장기성과 거액의 보험금에 착안해서 현금의 시간적 가치와 재보험자의 책임한정을 반영하는 Finite 솔루션의 출현을 보게 되었다. 이 솔루션에서 재보험자의 책임 한정은 곧 재보험자의 이익한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출재사에 환급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Finite 솔루션의 구매 동기는 대차대조표상 재무구조의 개선에 있었고, 특히 '80년대 중반이후 급격한 실적 악화로 재무 건전성을 위협받고 있는 손해보험사에게 더욱 절실하였다. 그 이후 감독당국이 (재)보험자에게 부과하는 지급능력기준의 충족 등을 위해 보험금포트폴리오전가(LPT:Loss Portfolio Transfer)솔루션과 逆進展保險金擔保(ADC:Adverse Development Cover)솔루션이 개발되었는데, 이들 솔루션은 대차대조표상의 부채로부터 배상책임보험의 장기 미결클레임을 제거하는 등으로 계약자 잉여금 증대를 가져오도록 고안된 상품이다. 기업의 대차대조표상 재무구조를 단기간에 개선하기 위한 이러한 금융재보험(Pure Financial Re)상품은 위험전가를 상당부분 수반하는 Finite 재보험과는 구분된다.²⁸⁾

28) 이기형 · 김평원, 『손해보험의 금융재보험 동향』,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97.11.

2. 有用性 및 可用範圍

가. 유용성

Finite 재보험의 가장 유용한 기능은 어느 특정 년도의 급격한 손해율의 변동을 장기간의 계약기간에 흡수하여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써 출재사는 일반 재보험시장에서 순환기적으로 볼 수 있는 요율파동, 담보력파동 그리고 손해율 파동에서 벗어날 수 있다. Finite 재보험은 책임준비금과 현금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실제지급 재보험료간의 차액을 이익으로 확정하는 등으로 출재사의 재무구조를 개선 할 수 있고, 각종 레버리지 비율(보유보험료/ 자기자본, 지급준비금/ 자기자본 등)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일반재보험과 마찬가지로 Finite 재보험은 원보험자에게 담보력 증대를 제공한다. 담보력 증대는 보험료 정산에서 뿐만 아니라 보험금 지급준비금의 이전 등으로도 이를 수 있다. 또한, 일반 보험시장에서의 재보험 가격 파동과 위험인수 능력의 한계 등으로 재보험 소화가 덜된 부분을 Finite 솔루션을 통하여 추가로 자가 보유하여 보유증대를 기할 수 있다. 끝으로, 대형화 추구를 위한 원보사간(또는 기업간) 인수·합병에 있어 배상책임보험 등에서의 장기 미결클레임을 Finite 재보험자에 이전하므로서 구조조정 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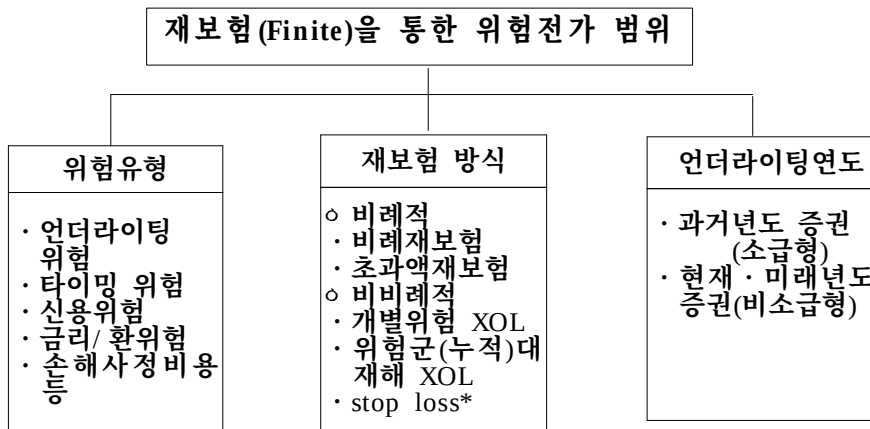
나. 가용범위

Finite 재보험의 계약형태는 일반 재보험에서와 같이 比例型和 非比例型으로 나뉜다. 또한 손해액(지급책임)이 어느 연도의 계약에서 발생한 것인가에 따라 소급형과 비소급형으로 나뉘는데, 소급형은 과거년도 증권상의 위험담보이고 비소급형은 현재 또는 미래년도 증권상의 위험담보이다.

소급형 재보험 솔루션은 클레임 종결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현금의 시간

가치를 이용할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에서 유용하고 비소급형 재보험 솔루션은 자연재해 담보를 위한 기금형성이나 향후 실적 안정화가 필요한 종목에 적합하다. 따라서 소급형 솔루션에서 원보사는 장기 미결클레임(손해사정비용 포함)을 출재할 수 있고, 수재사는 동 클레임의 run-off²⁹⁾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그림 6>



* : stop loss cover : 특정 종목 또는 위험군의 경과누적손해율이 일정금액 또는 일정수준 (예 : 70%)을 초과할 때부터 재보험자의 지급책임이 개시되는 비비례적 재보험의 한 형태. 김기현, 『재보험 실무』, 보험연수원, 1998

자료 : Swiss Re, *Sigma* No.5, 1997

29) run-off위험 : 재보험 특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유효한 모든 보험사고에 대해서 재보험자의 지급책임은 계속해서 잔존한다는 것으로서, 재보험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재보험자의 책임이 종료되는 clean-cut과는 대칭되는 개념임.

3. 主要契約形態

원래 Finite 솔루션은 고객주문형 상품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형화된 방식은 없다. 그럼에도 여기서는 Finite 재보험 특성을 잘 나타내 주고있는 대표적인 네 가지 형태, 즉, Loss portfolio transfers(LPT), Adverse development covers(ADC), Finite quota shares(FQS) 및 Spread loss treaties(SLT)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³⁰⁾ 이 중 LPT와 ADC는 과거년도 증권에서의 보험사고 담보이기 때문에 소급형 담보이고, FQS와 SLT는 장래형 담보이다. LPT가 원보사의 미지급보험금포트폴리오를 Finite 재보험자에 출재하는 것임에 비하여 ADC는 이미 적립되어 있는 보험금 지급준비금이 예기치 않게 증가하는 경우 그 지급준비금의 초과분 위험을 재보험 담보하는데 쓰인다. FQS는 일반 재보험에서의 비례재보험과 흡사하나 금융적 요소가 일부 가미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끝으로 SLT는 보험료와 보험금을 기간적으로 분산해서 영업실적을 안정시키는데 유용하며, 기금형태의 계약이기 때문에 Funded Cover라고도 부른다.

가. 보험금포트폴리오전가(LPT:Loss Portfolio Transfers)

LPT는 과거년도 증권상에 잔존해 있는 보험금 지급채무(미지급보험금 및 미지급손해사정비)를 Finite 재보험자에 전가할 때 쓰이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 방식은 소급형 담보가 된다. 재보험료는 출재사가 적립하고 있는 지급준비금에서 장래의 투자수익을 미리 공제한 금액이 되며, 여기에 언더라이팅 관련 위험보험료와 재보험자의 사업비용과 이윤을 추가한다. 여기서 위

30) Swiss Re, Sigma No. 5, 1997. 또 다른 분류로는 비례재보험 형태로서 Financial Q/S agreement, 비비례적 재보험 형태로서 Loss portfolio transfer, Retroactive aggregate excess of loss, Prospective aggregate excess of loss 및 Time & distance 등이 있음. George Monti & Andrew Barile, *A Practical Guide to Finite Risk Insurance and Reinsurance*, John Wiley & Sons, Inc, 1995, p.172.

험보험료는 보험금 조기지급과 준비금위험 등 언더라이팅 위험에 수반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보험금 조기지급위험은 클레임 발생에서 종결시까지의 기간을 추세법으로 측정하고, 준비금 위험은 발생보험금 기준 補外法(extrapolation) 등 통계적 기법³¹⁾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이 솔루션을 통해서 출재사는 여러 가지 이점을 갖는다. 지급준비금을 재보험료로 현금 할인한 금액만큼 계약자잉여금이 늘어나 지급능력의 증대는 물론 각종 경영효율이 개선된다.

또한 장기 미결클레임을 전부 재보험자에게로 전가하거나 계산 가능한 수준으로 줄임으로써 특정종목 또는 특정지역으로부터 사업철수 또는 인수 합병을 용이하게 해주고, 그 결과 보험산업의 구조조정 추진에 촉매제 역할도 담당한다. 이 방식은 또한 비용과 시간상 run-off에서 오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

31) 발생보험금 기준 보외법은 연도별, 진전기간별로 발생보험금 규모에 대한 과거 경험치에 기초하여, 평가일 현재 회사의 종국적 지급 책임액을 추산한 후 기지급 보험금을 공제하여 산출하는 방법임. 통계 데이터를 이용한 추산보험금 산출은 기준금액 설정에 있어 지급보험금/발생손해액이 있고, 통계기간 설정에 있어서는 사고년도/통지년도/증권년도가 있으며, 전개방법에 있어서는 누계방식/증가분방식 등이 있음.

<표 10> LPT 사용예(1)

손익계산서				
		LPT 이용 전		LPT 이용 후
경과보험료		1000		800
지급보험금		-100		-100
미지급준비금 증가		-600		-300
경 비		-350		-350
언더라이팅 실적		-50		50
투자실적		50		50
영업실적		0		100

대차대조표				
LPT 이용 전			LPT 이용 후	
자 산	부 채		자 산	부 채
2000	지급준비금	600	1800	300
	기타부채	1100		1100
	잉 여 금	300		400

경영효율		
	LPT 이용 전	LPT 이용 후
손해율	70%	50%
사업비율	35%	43.75%
합산비율	105%	93.75%
지급능력(잉여금/ 경과 보험료)	30%	50%

자료 : 이기형/ 김평원, 『손해보험의 금융재보험 동향』,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1997.11.27. 재인용

<표 11> LPT 사용예(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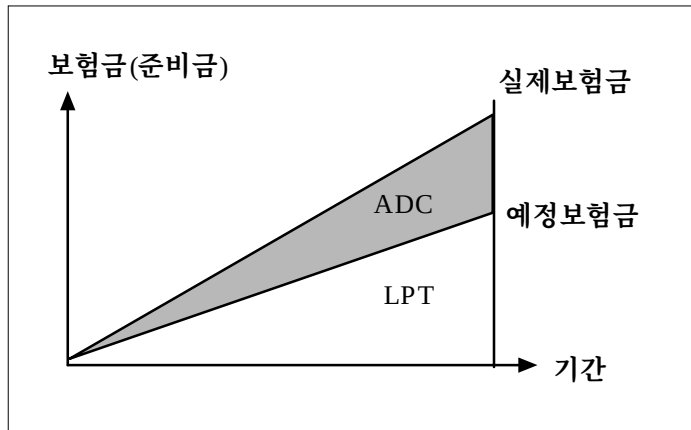
대 상	회사채 보증보험 지급준비금
방 법	· 과거년도 증권상 보험금 지급채무 일체를 해외 Finite 재보험자에게 이전하고 보험금 지급에 대한 출재사의 직접 책임을 종료 · 지급준비금을 현금할인(장래투자수익)하여 재보험료 지급
효 과	· 현금할인액 만큼 계약년도 회기 당기손익 일시개선 · 지급준비금 소멸

LPT의 변형으로 Time & Distance(TD) 계약형태가 있다. 이 방식은 LPT와 마찬가지로 출재사에게는 지급준비금의 할인효과가 있어 잉여금 증대와 현금 유동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재보사에게는 LPT에서와 같은 언더라이팅 위험과 보험금 조기지급 위험이 없고, 다만 사전에 약정한 기일에 정기적으로 약정보험금을 반환 지급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한 투자위험만 존재한다. 따라서 이 TD는 저축계약과 유사하다. 과거 로이즈 신디케이트가 오래된 계약의 잔존책임을 대차대조표로부터 제거하는데 사용하여 왔다. 이 TD방식은 위험전가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의 감독당국으로부터 재보험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나. 逆進展準備金擔保(ADC:Adverse Development Covers)

ADC계약은 과거년도 계약에서의 손해담보라는 점에서 LPT와 같으나 LPT와 같이 미지급보험금 포트폴리오가 출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초과분을 담보하는 계약이다. 즉, 재보험자는 이 계약을 통해서 원보험자의 IBNR 준비금과 준비금과소계상(IBNER)위험을 인수하는 셈이다. 인수방식은 Stop Loss나 XOL 형태를 취한다. 재보험료는 언더라이팅 위험의 성격, 규모 그리고 계약기간 중 지급처리된 추산보험금 규모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현금의 시간적 가치를 이용한다는 점은 LPT의 경우와 같다.

<그림 7> ADC와 LPT



자료 : Swiss Re, Sigma No.5, 1997

이 방식은 장기 미결클레임을 Finite 재보험 카바로 가두어 놓기 때문에 언더라이팅 실적의 급등락을 막아주고, 그 결과로 출재사(또는 자가보험자 / 캡티브 등)는 필요시 일반 보험시장에서의 XOL 카바를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된다. 이 방식을 통해서 출재사는 일반 재보험자에 대한 신용위험을 전가할 수가 있으며, 또한 LPT와 마찬가지로 보험회사의 인수·합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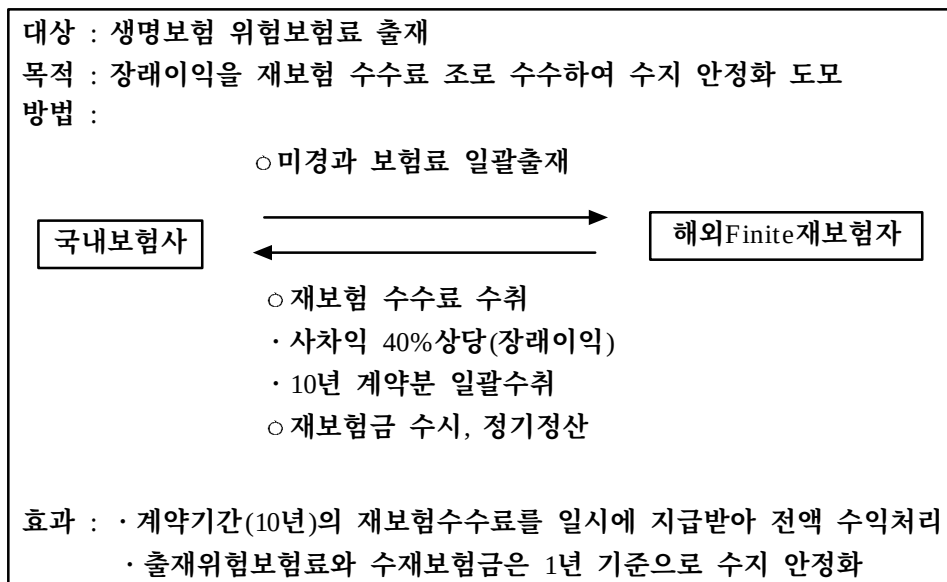
다. 금융비례재보험(FQS:Finite Quota Shares)

일반적으로 보험회계에서 원수보험료 중 경과보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미경과보험료는 전액 부채로 처리한다. 반면, 신계약비 등의 사업비는 수익의 대응이 없이 보수주의에 입각해서 전액 비용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이 감소된다. 따라서 신계약이 많은 연도에는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의 감소가 특히 심하다. 이러한 회계처리상의 일시적 잉여금 감소를 피하는 수단으로서 FQS가 사용된다. 즉, 원보험자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미경과보험료 부분을 Finite 재보험자에 출재하고 장래의 미실현 이익을 재보험 수수료 형태로 미리 지급받아 이러한 잉여금 감소를 메운다. 이와 같

이 재보험수수료를 잉여금 구제에 사용함은 일반 비례재보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Finite 비례재보험이 일반 비례재보험과 다른 점은 Finite 재보험자의 책임이 절대금액 또는 손해율(예 : 60%) 형태로 한정되고, 재보험 수수료가 실적에 연동되어 차등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재보험 책임이 상당 수준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이 방식에서 Finite 재보험자가 손실을 입는 경우는 드물다.

이 재보험 방식으로 원보험자는 위험인수 능력을 증대시킬 수가 있고, 감독당국이 정하는 지급여력 기준을 충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언더라이팅 실적의 안정화를 기할 수가 있다. 이 FQS는 또한 Finite담보 중 가장 오래된 형태로서 당년도·차년도 계약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소급형 담보에 속한다.

<표 12> FQS응용(例)



자료 : 우리나라 생명보험 관련 공청회 제시안('98. 10.)

한편, 재보험 수수료율의 슬라이딩스케일에서 손해율이 높으면 수수료율은 낮아지고 손해율이 낮으면 수수료율이 높아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Anticyclical FQS라 불리는 재보험솔루션에서는 그 반대이다. 즉, 손해율이 올라가면 수수료를 더 지급하고 손해율이 내려가면 수수료를 덜 지급한다. 원보험자가 자금을 필요로 할 때 집중해서 지원한다는 논리다. 이 방식의 개발은 담보력을 보다 증대시키고 실적을 보다 안정시키고자 하는데서 비롯한다. 그러나 이 反슬라이딩 스케일은 보험료를 싸게 하고 보험금지급을 후하게 하는 출재사의 모럴해저드를 유발시킬 수 있다.

라. 보험금분산특약(SLT:Spread Loss Treaties)

대체적으로 원보험자는 장래 발생하는 손해액 추정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추산하고 있으나, 이들 손해를 개별 년도로 나누어 배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외로 약하다. 이에 착안하여 SLT는 보험료와 보험금을 전 특약기간에 걸쳐 미리 배분하여 위험을 기간적으로 분산토록 고안된 방식이다. 이 방식은 언더라이팅 실적의 안정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상당량의 위험전가가 이루어지는 계약에서도 유용하다. 운용방식을 보면, 원보험자는 전 특약기간(5~10년)에 걸쳐 사전에 정한 연간보험료를 별도계정(경험계정 : Experience Account)으로 해서 재보험자에게 지급한다. 이 계정에서 보험금과 재보험비용이 지급되고, 발생이자 원보험자의 몫이다. 보험금 지급으로 이 계정의 잔고가 부족하면 일정 한도 내에서 원보험자가 추가보험료를 지급한다. 특약 만료시 동 계정이 마이너스 상태에 있으면 원보험자는 그 일부를 보전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일부 반환을 재보험자에게 청구한다.

<표 13> SLT 사용례 (경험계정)

< 특약조건 >						
· 원보험자, 재보험료를 매년 10을 지급 · 특약기간 6년 · 재보험자 책임 연간 30, 특약기간 누계 100 · 추가보험료 지급한도 연간 5, 재보험자 적자 해소시까지 지급 · 별도계정의 연간이율 10% · 보험료 매년초, 보험금 매년말 지급 · 특약 종료시 플러스 계정 50% 반환, 마이너스 계정 50% 보전 · 편의상 재보험마진과 위험보험료는 생략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①보험료 수입	30.0	30.0	30.0	30.0	30.0	30.0
②사업비	10.0	10.0	10.0	10.0	10.0	10.0
③보험금	20.0	30.0	0.0	0.0	20.0	0.0
④재보험료	10.0	15.0	15.0	15.0	10.0	15.0
⑤이 자	1.0	0.6	-0.8	0.6	1.6	1.3
⑥잔고(별도계정)	-9.0	-23.4	-9.2	6.3	-2.0	14.3
⑦SLT있을시 실적	10.0	5.0	5.0	5.0	10.0	5.0
⑧재보험자 최종지급						+7.1
⑨SLT 없을시 실적	0.0	-10.0	20.0	20.0	0.0	20.0
주 : 1) ⑥=④+⑤-③+전년도 잔고 2) ⑦=①-②-④ 3) ⑨=①-②-③						

자료 : Swiss Re, Sigma No.5, 1997

이 특약에서 재보험자는 단 · 중기 자금대여자 역할을 하는 것은 틀림없으나 그렇다고 언더라이팅위험을 담보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특약 종료시 경험계정에 잔고부족이 있는 경우 출재사가 이를 전액 보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SLT의 가장 큰 장점은 타이밍리스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그 결과로 영업 실적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재보

험담보 구독불능 우려에서 벗어나 재보험 비용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다. 이 방식은 타이밍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럽 국가에서의 평균 화준비금과 비슷하다. 이상에서 살펴 본 Finite 재보험의 네가지 형태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4> Finite 재보험 방식

	소급형 여부	출재대상위험	재보험료	장 · 단점
LPT (Loss Portfolio Transfers)	소급형	· 과거년도 증권 에 잔존해있는 보험금 지급 채 무(미지급보험금 / 미지급손사비)	· +)지급준비금 적 립액 · -)예정투자수익 · +)위험보험료(보 험료 조기지급 위험등) · +)관리비용 · 이 윤	· 지급준비금과 재보험료 차액만큼 수익이 계상 되어 계약자 잉여금이 증가(지급능력 증대) · 특정종목,지역으로부터 사업철수 또는 사업중 지시 유용 · 인수합병에 촉매제 역 할
ADC (Adverse Develop- ment Covers)	소급형	· 원천적으로 기 발생미보고(IBN R)준비금 및 준 비금과소계상(IB NER)위험(현존 보험금 지급준비금 적 립액을 초과하 는 채무)	· 출재대상 물건건 의 언더라이팅 위험정도와 추 산보험금 현재가 를 감안하여 결 정(예정투자수익 공제)	· 인수합병 촉진가능 및 기업가치 증대 · 전통 XOL커버 구독 용 이
FQS (Finite Quota Shares)	장래형	· 당년도 또는 차 년도 증권에 미 경과보험금과 한도 위험(재보 험금 지급준비 금 제외하고는 반비례재보험과 유사)	· 출재율, 재보험 자 책임한도, 특 약적용금리등 을 감안하여 결 정(예정투자수 익 공제)	· 재보험 수수료로 잉여 금 감소 회피 · 담보력 증대 및 실적안 정 · 지급능력기준 충족 도 모 ·反슬라이딩 스케일 FQS의 경우 출재사의 모랄해저드 유발가능
SLT (Spread Loss Treaties)	장래형	· 언더라이팅 위 험(보험료와 보 험금을 전 특약 기간(5-10년)에 걸쳐서 사전에 배분) 및 보험금 조기지급 위험	· 언더라이팅 위 험정도, 재보험 자 책임한도, 특 약적용금리등 을 감안하여 결 정	· 보험료와 보험금 지급 을 기간적으로 분산하 여 보험금 조기지급 위 험에 대처 · 실적 안정으로 언더라 이팅 계속성 견지 가능 · 일반보험 시장에서의 재보험카바 구독 불능 우려 제거

4. 책임한정 再保險의 展望

미국의 보험시장은 80년대 후반 이후 담보력의 공급초과와 극심한 가격 경쟁 등으로 시장 퇴출사가 속출하고 보험기업간 인수·합병 등 시장의 구조조정은 멈출 줄 모르고 있다.

이 와중에서 석면클레임과 환경오염클레임은 칼의 양날로 미국 손해보험 시장을 조이고 있다. A.M.Best사에 의하면, 미국 손보업계의 준비금 부족액은 570억 달러 내지 92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³²⁾ 이러한 상황에서 장래 책임은 물론 과거 책임도 이전하게 해주고 정치위험, 수용·몰수위험 등 부보불가위험을 기존의 XOL재보험과의 결합을 통해서 부보를 가능하게 해주는 Finite 솔루션은 그 전망이 밝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럽은 1994년 7월 보험 제3지침의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보험가격 및 조건에 상당한 자유화가 진행되고, 시장진입장벽도 크게 완화되었다. 그 결과 보험회사간 경쟁격화로 수익의 폭이 좁아지는 등 실적이 불안정하게 되자 비용 효과적이고 실적평준적인 책임제한의 Finite상품을 선호하게 되었다. 유럽 보험시장에는 평준화준비금(equalisation fund)이 있어 이 준비금을 수리적 연산방식에 의해 적립 또는 해제함으로서 영업실적의 급격한 변동을 막고 안정화를 꾀하는 제도가 있으나, 이 제도가 자유화되는 시장환경에서도 그 유용성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는 의문이 있다. 따라서 Finite 재보험은 이 목적달성과 관련해서 기존제도의 보완시설로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다.

아시아 국가의 경우에도 상황은 비슷하다. 금융시장의 통합진전, 위험자본금의 부족, 영업실적의 불안정, 주주 영향의 증대 등으로 출재사는 증대된 보유량을 안정적으로 보호해 주는 주문형 재보험 장치를 찾는다. 또한

32) Swiss Re, Sigma No.5, 1997.

상당수의 아시아 보험자는 규제완화로 인한 경쟁심화를 기업공개로 맞서고 있다. 이 기업공개를 보다 용이하게 해주는 수단으로서 소급형 형태의 역진전준비금담보(ADC : Adverse Development Cover)가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급 여력기준 충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고안된 Finite 비례재보험(FQS : Finite Quota Shares)방식도 그 중요도를 더하고 있다.

V. 주요국의 再保險規制環境과 국내재보험의 대응

1. 主要國의 再保險規制

가. 미 국

1) 일반재보험

미국에서의 일반 재보험거래에 대한 규제는 한마디로 「회계제도(재보험 크레딧)를 이용한 출재보험자와 수재보험자의 동시규제」로 요약될 수 있다. 즉, 출재사가 재무제표상 재보험크레딧(재보험준비금을 자산으로 계상 또는 부채에서 공제함으로써 출재사의 잉여금 압박을 완화)를 받으려면 수재사가 지급책임의 이행능력이 있는 자임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이에 미국의 대부분의 주는 재보험크레딧 허용조건 즉, 수재사의 지급 책임 이행능력 등에 관한 요건과 절차사항을 입법화해서 시행하고 있다. 이들은 NAIC의 1990년도 재보험크레딧에 관한 모델법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 모델법은 1977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이래 그간 재보험시장의 위축을 가져옴이 없이 어떻게 하면 재보험금 회수를 확실히 할 수 있겠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수차에 걸친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이 법률은 주마다 조금씩 달라 대내외의 출재사 또는 수재사로부터 비판이 있어 왔고, 동 법률조항의 통일화가 NAIC의 목표가 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연방정부에 의한 통일된 재보험감독이 발의되기도 하였다.³³⁾ 이 모델법의

33) 미국에서 주정부가 보험감독을 행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연방정부가 감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미국하원의 한 보고서(일명 Dingell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지급능력 규제에 있어 재보험은 사각지대이며, 어떤 규제가 없더라도 원보사는 재보험처리를 잘 할 수 있다는 전제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함. 이 위원회는 또한 연방정부에 가칭 「연방보험지급능력위원회」의 설치를 주창함. Wishful Thinking ; A World View of Insurance Solvency Regulation, 미 하원 에너지 및 통상위원회 산하 감시/ 조사 소위원회 보고서, 1994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NAIC의 재보험크레딧 모델법 주요 내용

출재분에 대한 계정처리를 함에 있어 출재사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보험크레딧(동 출재분을 자산으로 인정하거나 부채에서 공제)가 허용된다(제2조 및 제3조).

(제2조)

(A) 自州에서 허가를 받은 者³⁴⁾

- 출재사 소재지 州에서 보험사업(원·재보험)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출재하는 경우

(B) 他州의 보험자로서 自州에서 재보험자로 인정(credited) 받은 者³⁵⁾

- 他州의 보험자로서 출재사 소재지 주에서 재보험자로 인정받은 자에게 출재하는 경우
- 출재사 소재지 주 보험당국이 通知와 審理후 재보험자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 재보험크레딧 부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C) 출재사 소재지 주의 재보험크레딧 허용기준과 상당히 유사한 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주에 소재해 있는 자

- 출재사 소재지 주의 재보험크레딧 허용기준과 상당히 유사한 허

34) 미국의 대부분의 주는 원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동 허가 받은 종목에 대해서 재보험사업을 동시에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5) 여기서 「재보험자로 인정(credited) 되는 자」라 함은 (a) 출재사 소재지 주의 재판관할권의 적용을 받고 (b) 장부·서류에 대해 출재사 소재지 주 보험당국의 검사를 받을 것이며 (c) 미국 1개주 이상에서 원보험 또는 재보험 사업면허를 득하고 (d) 소재사 소재지 주 보험당국에 제출한 연차보고서 및 최근의 재무제표(회계감사 필)를 매년 출재사 소재지 주 보험당국에 제출하고, 2000만달러 이상의 보험계약자 잉여금을 보유하고 있고 재보험자 인정이 신청후 90일내에 출재사 소재지 주 보험당국에 의해 거절된 적이 없이 정히 승인된 자를 말함.

용기준³⁶⁾을 적용하고 있는 주에 소재하고 있는 자(동 주에 진출한 외국사지점 포함)에게 출재하는 경우로서 (a) 2000만달러 이상의 보험계약자잉여금을 보유하고 있고 (b) 장부·서류에 대해 출재사 소재지 주 보험당국의 검사를 받을 것임을 약속하는 경우

D) 信託基金을 예탁하고 있는 者

o 수탁자로서 자격이 있는 미국 금융기관³⁷⁾에 신탁기금을 예탁하고 있는 자에게 출재하는 경우. 이 경우 보험감독관이 신탁기금의 충분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수재사는 매년 면허소지 미국보험자가 감독당국에 보고하는 정도(NAIC 연차보고서)의 정보를 당해 감독당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수재사는 장부·서류에 대해 감독당국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³⁸⁾.

E) C항(他州 (재)보험자에게의 출재) 및 D항(신탁기금의 설정)의 경우라 할지라도 수재보험자가 재보험특약서상 다음 사항을 동의하여야만 재보험크레디트가 허용된다.

(a) 수재보험자가 재보험특약서상의 지급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 출재 보험자의 요청에 따라 수재보험자는 미국 관할법원에 신고하고, 동 법

36) 여기서 「상당히 유사한 허용기준」이라 함은 출재사 소재지 주가 시행하고 있는 기준과 같거나 그 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서 출재사 소재지 주의 보험감독관이 결정하는 허용기준을 말함.

37) 「수탁자로서 자격이 있는 금융기관」이란 미합중국 또는 주 법률에 의해 설립 또는 면허부여(외국사 지점의 경우)되고 당해 감독기관의 감독·검사를 받는 금융기관을 말함.

38) 이 이외에 수재사는 출재사(신탁수익자) 소재지 주 보험감독관에게 신탁증서양식(개정양식 포함)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함. 승인이 없으면 재보험크레디트가 허용되지 아니함. 이 양식에는 다툼이 있는 클레임은 미국 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른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개설된 신탁사항은 수재보험자의 재보험의무가 잔존해 있는 한 계속 유효하고 수탁자는 매년 2월 28일 이전에 전년도 말 현재 신탁잔고와 신탁자산의 투자내용을 감독관에 서면 보고하여야 함. 신탁기간의 종료일이 언제라는 것을 확실히 하거나 또는 금년 12월말 이전에는 기간만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여야 함.

원(또는 상소법원)의 최종판정을 따른다. (b) 보험감독관(또는 그 지명자)을 법정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법정대리인은 출재사가 제기하는 등의 소송에서 소환장 송달접수 등의 소송절차사항을 대리 수행한다.

(제3조)

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재보험자에게 출재하는 경우 재보험크레디트는 출재사가 재보험계약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보증금액(재보험예수금 등)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다. 이 경우 보증금액은 i) 현금 ii) NAIC의 유가증권평가국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iii) 공인금융기관이 발행·확인하는 신용장³⁹⁾ 등의 형태로 존속해 있어야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모델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재보험사가 재보험출재로서 회계상 크레디트를 부여받으려면 ① 수재사가 면허, 인정, 신탁설정 등으로 지급책임의 이행능력이 있어야 함이 증명되어야 하고, ② 동 능력증명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크레디트 부여가 허용되지 않거나 허용되더라도 특약출재예수금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재보험크레디트를 허용 받으려면 상기 모델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 이외에 소위 지급불능약관(Insolvency Clause)과 재보험중개자약관(Reinsurance Intermediary Clause)이 재보험특약서상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Insolvency Clause는 출재사가 지급불능에 빠지는 경우라도 수재사는 청산인 등에게 재보험지급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취지의 조항이 재보험계약서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는 출재사 재무제표상 재보험크레디트 부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뉴욕주의 경우는 이를 보험법에서의 한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⁴⁰⁾.

39)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① 취소불능 ② 일람불 ③ 기간 1년 ④ 만기일 30일전 사전통보로서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2년간 자동갱신(evergreen cl.) ⑤ 지급은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조항의 삽입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Reinsurance Intermediary Clause는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중개자에게 지급이 있는 경우 동 중개자제로의 지급에 대해 재보험자가 신용리스크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서, 이 조항이 재보험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출재사에게 재보험크레디트가 허용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Reinsurance Intermediary는 Reinsurance Intermediary Broker⁴¹⁾나 Managing General Agents⁴²⁾라기 보다는 재보험자를 대리해서 수재보험계약을 체결, 관리하는 재보험중개담당책임자(Reinsurance Intermediary Manager)를 말한다.

다음은 재보험거래 실적보고와 관련하여 미국 NAIC의 연차보고서상 스케줄 F에 관한 사항이다. 재보험자와 출재사 모두가 작성하여야 하는 이 스케줄 F는 8개 파트⁴³⁾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양식을 작성케 하는 목적은

40) Insolvency Clause의 제정배경은 다음과 같음. 1932년 Southern 보험회사(뉴욕)가 파산 선고되자 뉴욕주 보험감독청장인 Lewis H. Pink는 동사의 청산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재보험자에게 재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그러나 재보험자는 재보험특약서상에 원보험자의 실제손해가 없으면 재보험자의 보상이 없다는 실손보상원칙을 들어 지급을 거절함. 즉, 출재사의 원보험금 지급이 없으면 수재사의 재보험금 지급도 없다는 논리인데, 문제는 출재사가 지급불능에 빠져 원보험금 지급이 없는 경우 재보험금 회수가 불가하게 되고, 재보험금 회수가 불가하니 원보험금 지급이 안되는 모순에 빠지게 됨. 결국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미 대법원은 원고패소로 판정함. 이에 뉴욕주는 보험법 제77조(현행 제1308조)에 「수재보험사는 출재보험사의 지급불능을 이유로 재보험금을 감액함이 없이 오직 출재보험사의 원보험금 지급책임에 기초해서 재보험금 지급책임을 이행한다는 조항을 재보험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조항이 없는 경우 출재보험사에 재보험크레디트 부여가 허용되지 아니함」이라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후 NAIC도 Insolvency Clause에 관한 모델법을 만들어 대부분의 주가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 Jonathan F. Bank외 2인, "The Regulation of Reinsurance in the U.S.", *Journal of Insurance Regulation*, VOL. II, #2. p.217

41) Reinsurance Intermediary Broker는 출재보험자로부터 어떤 위임권한을 부여받음 없이 출재사를 위하여 재보험 또는 재재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 교섭, 실행하는 자를 말함.

42) Managing General Agent(MGA)는 원보험자를 대리하여 계약모집, 언더라이팅, 클레임, 재보험 등 보험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함.

43) 8개 part는 Part 1 재보험수재(assumed reinsurance), Part 2 포트폴리오재보험(portfolio reinsurance), Part 3 재보험출재(ceded reinsurance), Part 4 재보험미수기간(aging of ceded reinsurance), Part5 미인가재보험(unauthorized reinsurance), Part 6, 7, 8은 인가재보험의 기간경과에 따른 벌칙부과와 대차대조표의 재구성에 대한 것임.

지급기일을 넘긴 재보험자 명단과 장기 미수재보험금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재보험미수채권을 미수기간별로 기록케 해서 해당 계정의 회수가능성을 판단하고, 90일 초과 미수분에 대해서는 잉여금 벌칙(surplus penalty)을 가해서 재보험을 통한 자산증가와 부채경감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의 재보험규제는 ① 회계처리(재보험크레딧)를 통한 규제 ② 개별재보험특약서 내용상 규제 ③ 연차보고서 보고내용상 규제의 3종의 규제를 행하고 있다.

나. Finite재보험

미국에서 Finite재보험에 대한 규제는 財務會計基準審議會 (FASB : US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1992년에 발표한 FASB No.113과 그 다음 해의 EITF⁴⁴⁾ 93-6에 기준 한다. 이들은 보험감독법에 의한 규제라기 보다는 회계기준에 의한 규제이다.

FASB 113

어느 재보험거래가 일반기업회계기준(GAAP)에 입각하여 작성되는 재무제표상 재보험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는 상당량의 언더라이팅리스크와 타이밍리스크의 전가가 있는 거래이어야 한다. 언더라이팅위험의 전가없이 타이밍리스크 전가로서만은 기준충족이 안된다. 여기서 “상당량”(significant measure)이 어느 정도의 양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이 없기 때문에 일반재보험에서와 같이 계약으로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아직 가능하다고 본다. 둘째의 재보험 인식요건은 재보험자가 사고발생확률과 금액 면에서 손실을 입을지도 모르는 상당한 위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FASB 113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의 공표가 의무화된 상장보험사는

44) EITF : FASB내의 작업반 명칭. 정식명칭은 Emerging Issues Task Force of the FASB임.

LPT(Loss Portfolio Transfers) 방식에서 얻는 이점이 줄어들었다. 보험금준비금과 재보험료의 차액, 즉, 현금할인액을 재보험수수료로 지급 받아 일시에 보험영업이익으로 계상함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동이익을 전 계약기간에 걸쳐 분산·배분토록 하였기 때문이다. 재보험자가 상당량의 보험위험을 전가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순액주의의 재보험거래로 인하여 준비금을 계약 당년도에 일괄 허문다는 것은 준비금을 숨기는 것과 다름없다.

EITF 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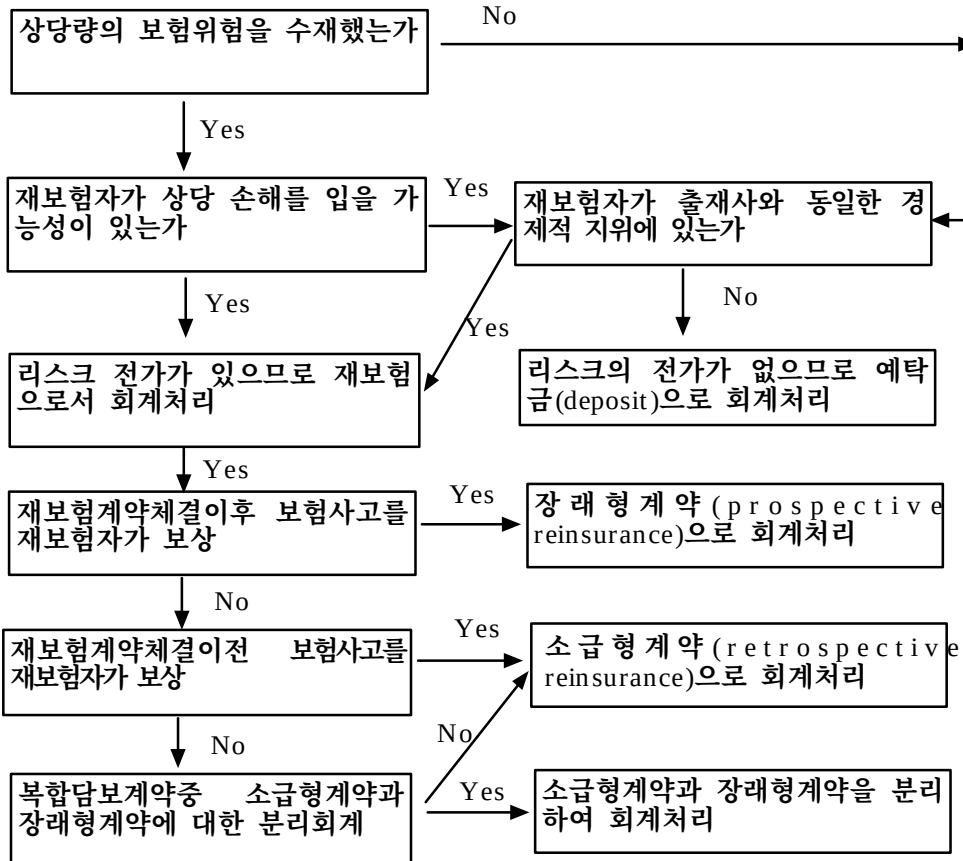
이 가이드라인은 경험계정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전 계약기간에 걸쳐 분산·지급하는 기금형태계약인 SLT(Spread Loss Treaties)에 주로 적용된다. 이 지침으로 출재사는 동 계정의 잔액이 (+)이면 자산으로, (-)이면 부채로 나타내게 해서 기간별 분산·안분을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계정처리는 손익안정화를 기한다는 동 특약의 장점을 없애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이 규제는 계약으로 동 계정의 대차를 일치시킬 것을 정하고 있는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즉, 이익의 환원 또는 손실의 보전으로 대차계정이 균형을 이루는 기금형태계약의 경우, 출재사로 하여금 경험계정의 잔액을 대차대조표상에 표시할 것을 정하고 있는 것이 이 EITF 93-6 지침의 요지이다.

이러한 FASB 113과 EITF 93-6의 실효성에 대해서 일부 논란이 일고 있다. 즉, 경험계정의 잔고가 (+)이면 자산으로 표기하고 (-)이면 부채로 표기한다는 것인데, 이는 미실현손익을 표기하는 것으로 부분적으로 회계의 실현·공정성 원칙에 反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FASB 113은 미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공시하여야 하는 상장사에 적용되는 지침이다. 이 부문에 대한 NAIC의 감독회계기준(SAP : Statutory Accounting Principles)은 회계실무 및 절차에 관한 매뉴

일 제22장에 정해져 있다. 이 제22장은 1994년에 크게 개정을 보았는 바, 여기서 FASB 113이 가이드라인으로 작용을 하였다. Finite재보험에 대한 NAIC의 회계처리 체계는 아래와 같다.

<그림 8> NAIC의 Finite재보험 회계처리 체계도



자료 : 이기형.김평원, 『손해보험의 금융재보험 동향』,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1997.11.27.

나. 영 국

1) 일반재보험

EC회원국의 전업재보험자⁴⁵⁾는 원수보험자의 경우와는 달리 1978년 EC지침에 의하여 「자국감독주의」(Home Country Control)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EC회원국 전업재보험자의 영국지점에 대한 감독책임은 영국의 보험감독당국에 있다. 또한 EC회원국 전업재보험자가 영국에서 재보험사업허가를 받으려면 본국에서의 허가요건을 먼저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영국에서의 전업재보자는 원수보험자와 똑같은 금액의 지급여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⁴⁶⁾. 전업재보자가 유지하고 있어야 할 지급여력 기준금액은 원수보험자의 경우와 같이 보험료방식과 보험금방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Insurance Companies Regulations 1981, 스케줄 1 및 2).

전업재보험자의 자산평가와 부채의 결정은 원보험자의 경우와 동일하다(Insurance Companies Act 1982, 32(1), 38, 39). EEA역외국가의 전업재보험자는 사업허가신청에 있어서 예치금(deposit) 공탁요건이 면제된다(동법 9(3)).

전업재보험자에 대한 규제사항중 흥미로운 것은 부채에 상응하는 자산의 보유인데, 일반적으로 부채가 있는 장소에 자산이 존재(Matching & Localization Rule)할 것을 요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재보험특약이 그 대상지역을 전세계지역으로 하고 있는 재보험사업의 특수성으로 전업재보험자의 경우에는 이 요건의 적용이 면제된다. 그러나 비전업재보험자가 임의재보험으로 수재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 요건의 적용은 유효하다(Insurance

45) 비전업재보험자(원수보험자로서 재보험사업도 동시에 영위)와 구별하기 위해 전업재보험자 또는 순수재보험자(pure reinsurer)라고 표기함.

46) 영국 보험회사법(Insurance Companies Act 1982) 제31조 1항 : (a) 본사가 영국에 있는 보험회사 (b) 영국에서의 보험사업이 재보험에 국한하는 보험회사는 소정의 지급여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Companies Regulations 1944, Regulation 27).

전업재보험자는 또한 원보험사와 마찬가지로 재무상황을 정형화된 양식에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감독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내용은 원보사의 경우와 같다. 다만, 특약재보험은 별도로 분류하고 있어 보고할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게 되어 있다(Insurance Companies(Accounts & Statements) Regulations 1996).

재보험과 관련하여 연차보고서상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주요 재보험자의 이름과 주소, 재보험자별 특약보험료, 재보험자와의 관계, 재보험자별 재보험미수, 주요 출재사의 이름과 주소, 출재사와의 관계, 출재사별 보험료미수 등이다. 여기서 “주요 재보험자”라 함은 비례재보험계약에서 원보험료의 2% 이상을 수재하거나 비비례재보험계약에서 총 출재보험료의 5% 이상을 수재한 특약재보험자를 말하고 있다. 또한 비례 및 비비례재보험특약의 보험료 합계가 원보사 전체 수입보험료의 5%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인수한 재보험자도 주요 재보험자가 된다. 주요 재보험자로 한번 분류되면 그 후 자격요건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5년간은 보고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동 보고서는 또한 재보험자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동 재보험자와 거래하게 된 동기·근거를 기술하고 있도록 하고 있다.

주요 임의재보험의 거래내역도 보고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주요 임의재보험은 재보험자에게 지급되는 보험료가 총수입보험료의 0.5%를 초과하거나 일개 재보험자로부터의 채무 액이 회사 전체 수입보험료의 1%를 초과하는 계약을 말한다. 전업재보험자도 주요 출재보험사로부터 수재한 재보험내역을 보고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주요 출재보험사라 함은 전업재보험자가 거수한 특약재보험료의 5%이상 또는 전체 수입보험료의 2% 이상을 점하는 보험자를 말한다.

재무보고서의 작성기준은 보고대상에 따라 크게 사고년도 기준과 언더라

이팅 년도 기준으로 나뉜다. 언더라이팅 년도는 3년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해상과 항공특약을 취급하는 전업재보험자는 언더라이팅 년도에 기준해서 작성하여야 한다. 2년 기준의 비해상특약은 보험종목별로 작성·보고하여야 한다.

2) Finite 재보험

영국에서도 Finite 거래가 재보험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위험의 진정한 전가가 요구된다. 그러나 FRAG(Financial Reporting Accounting Group) 35/ 94가 요구하는 수준은 앞에서 살펴본 미국의 FASB 113이나 EITF 93-6 정도는 아니다. 즉, 재보험자의 손실위험이 언더라이팅리스크⁴⁷⁾와 타이밍리스크 모두에 기인할 필요는 없고, 타이밍리스크 이전 하나만이라도 재보험으로 인식하는데는 충분하다. 일반적으로 재보험자가 110% 이상의 손해율(현가기준)을 기록하게 될 가능성이 10% 이상 되면 일단은 손실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⁴⁸⁾.

또한 전가된 보험위험의 성격과 범위를 판단하여 해당 거래를 대차대조표상에서 계리하게 되는데, 일례로 SLT 계약에서 위험의 이전이 위험의 진정한 전가로 판단되는 경우 경험계정의 잔고를 미국의 EITF 93-6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경직된 방식⁴⁹⁾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영국은 Finite 재보험규제를 계약의 어느 일부가 아니라 계약의 전체를 경제적 본질(economic substance)차원에서 판단하여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재보험거래로 일괄 인정하지 않는 미국의 규제보다 실용성이 있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47) FRAG 35/ 94에서 재보험자의 보험위험을 「A reasonable probability for the reinsurer to sustain a significant loss」라고 정의하고 있음.

48) Finite보험에 대한 Guy Carpenter의 설명자료, 98.6.13

49) 경험계정의 (+)잔액을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표시하고, (-)잔액을 부채로 계상토록 함으로써 기간별 안분을 못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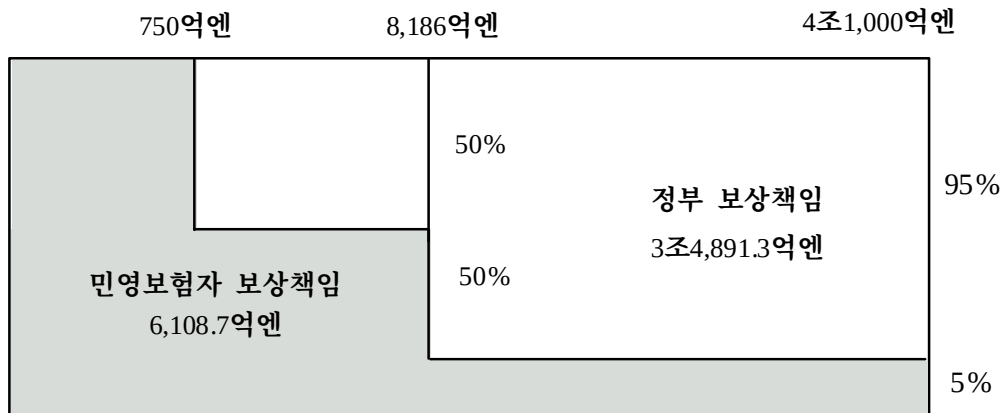
다. 일 본

1) 일반재보험

보험법상 일반재보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특별한 규제사항은 없다. 다만 원보사들이 대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Toa Re사⁵⁰⁾에 공동 및 개별 특약체결을 통하여 업계 스스로 자율적으로 출재하고 있으며, 또한 동사로 하여금 각종 특수위험에 대한 풀을 운영케 함으로써 자국내 보유극대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한편, 일본 손해보험의 재보험시장에서 지진위험에 대한 재보험형태는 흥미롭다. 1966년 지진보험법의 제정으로 도입된 이 보험은 재보험을 통하여 민영보험과 정부가 합작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당초 1지진당 3천억엔이었던 보상책임한도액이 지금은 거의 14배가 늘어난 4조 1천억엔에 이르고 있다. 이 지진위험담보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협력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림 9> 일본 지진위험 분산도



50) Toa Re사 : 1940년에 설립된 일본 유일의 전업재보험사. 보유보험료('98회기) 1조원, 자기자본 3,300억원(납입자본금 500억원), 총자산 2.1조원으로 세계 18위를 기록하고 있음. 일본 손해보험사가 대주주(68%)로 되어 있음. 동사가 운영하고 있는 풀은 자동 차배상책임보험(강제)풀, 항공풀, 원자력풀, 지진보험풀, 선박재보험풀 등 8개임.

- (A) 750억엔 까지 : 민영보험자 100% 책임
- (B) 750억엔 초과 8,186억엔 까지 : 정부50%, 민영보험자 50%책임
- (C) 8,186억엔 초과 4조1,000억엔 까지 : 정부 95%, 민영보험자 5% 책임
- o 민영보험자 보상책임총액 6,108.7억엔(₩750억 + ₩3,178억 + ₩1,640.7억)
- o 정부보상책임총액 3조 4,891.3억엔(₩3,718억 + ₩3조1,173억)

2) 재무재보험

일본의 재무재보험은 일본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장성 고시(제233호)로 규정화 되었다⁵¹⁾. 이 규정은 최근 일본 생명보험시장의 구조조정(일산생명, 동방생명 등)의 와중에서 금융재보험을 이용하고자 하는 필요성에서 만들어졌다. 따라서 손해보험에 대한 재무재보험 규정은 아직 없다. 1998.6.10부터 유효한 이 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 의⁵²⁾

재무재보험이란 원수회사가 보유하는 보험계약에 관련된 모든 리스크를 이전하는 재보험계약으로, 당해보험계약에서 장래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을 출재보험수수료(초년도 커미션)로서 미리 일정액을 수수하는 계약이다.

② 종 류

o 공동보험식 재보험

수재사가 원보험계약과 동일한 리스크의 일정비율을 인수하고, 동 수재 부분에 대한 책임준비금의 적립과 책임준비금상당액의 자산관리를 수재사

51) 정봉은·이승철,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구조조정』, 보험개발원/보험연구소, 1999. 7.

52) 이 정의에서 「보험계약에 관련된 모든 리스크」란 사차손익, 비차손익, 이차손익, 가격변동손익 관련 리스크와 해약익, 실효익 등 책임준비금 관련 리스크를 말함. 「보험계약에서 장래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은 보험료수입, 보험금 및 사업비지출 등 현금흐름으로 실현되는 수익과 사망률, 수익률, 유지율 등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함. 「출재보험수수료」란 신계약비 및 장래수익의 현재가치를 기본으로 하여 수재사와 원보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함.

가 행하는 재보험이다. 이 방식은 위험보험료뿐만 아니라 저축보험료까지도 재보험에 붙이기 때문에 사망위험뿐만 아니라 금리위험까지도 담보한다.⁵³⁾

o 수정공동보험식 재보험

수재사가 원보험계약과 동일한 리스크의 일정비율을 인수하고, 동 수재부분에 대한 책임준비금의 적립을 수재사가 행한다는 점에서는 수정공동보험식과 같으나, 책임준비금상당액의 자산관리를 원보사가 행하는 점에서는 다르다.

③ 요 건

- o 한도 : 특별히 정한 규정은 없지만, 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보수적 장래수지분석) 적절한 금액으로 한정
- o 수재사의 자격 : 국내외 감독당국으로부터 재보험사업면허를 부여받은 보험회사로서 지정신용등급기관 AA- 또는 Aa3 이상의 등급을 부여받은 보험회사
- o 출재보험수수료 사용처 : 책임준비금 증액에 한하여 사용
- o 재보험계약서상 기재사항
 - .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사항(보험료, 보험금, 재보험수수료 등)
 - . 재보험계약의 소멸은 출재보험군단이 모두 소멸한 경우 또는 원보사가 중도해약을 한 경우로 한정
 - . 수재사에 의한 일방적인 재보험계약 해제 불가(재보험료 불지급의 경우는 제외)
 - . 원수계약이 전건 소멸한 때에 잔존해 있는 출재보험군단의 손실(출재보험수수료의 미반환분 포함)에 대해서 원보사는 수재사에 지급책임 없음
 - . 합병·포괄이전에 의해 보험계약이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되는 경우 당

53) 국용호, 「재무재보험제도 도입방안」, 『월간생협』, 생명보험협회, '99.1.

해 재보험계약도 다른 보험회사에서 승계
. 원보사와 수재사간의 결제는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

④ 회계처리

회계처리는 종래 재보험과 동일하게 하고, 「출재보험수수료」의 현재잔고를 재무제표상 주기.

⑤ 보 고

- o 사전신고 : 재무재보험 계약체결신고서(양식1), 중도해약신고서(양식2)
- o 사후보고 : 재보험수지계산서(양식3, 4)를 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당국에 제출

라. 호 주

1) 일반재보험

호주에서의 출재사는 재보험에 대해서 법에 따라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⁵⁴⁾ 아울러 업계 스스로가 경험에 기초해서 만든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재보험에 관한 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보면, i)원보사의 무책임한 언더라이팅 심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보사는 원보험 契約總体の 40%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며 (계약총체의 60%이내에서만 출재가능), ii)원보험자의 위험당 보유한도도 유형자산 (Net Tangible Asset)의 5% 이내로 하고⁵⁵⁾, 재보험자의 경우는 7.5% 이내로 한다. 재보험자의 보유비율을 원보험자보다 약간 늘려서 허용하는 이유는 재보험자는 속성상 원보험자보다 균형이

54) 호주 보험법 (1973) 제 34 조 : 원보험자의 출재보험은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 경우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함. (1) 원보험자의 영위보험종목 (2)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3) 원보험자의 자산 내역과 시가평가 (4) 보험금 지급책임의 발생장소 (5) 재보험자의 건전성

55) 보험감독관은 보험자가 위험 보유액의 20배에 달하는 지급능력을 유지토록 하고 있음. 예를 들어 어느 재보험 특약에서 출재사의 보유금액이 50만 호주달러인 경우 등 출재사는 이에 20배에 달하는 1,000만 호주달러의 지급여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

잘 잡힌 위험포트폴리오의 유지가 필요하며, 계약자에 대한 보상책임의 이행과 관련하여 재보험자는 원보험자보다 한 발 물러나 있다는 점에서 설명되고 있다. iii) 자연재해 등 대형사고에 대해서 원보험자는 발생가능 최대손해액 (PML : Probable Maximum Loss)을 기준으로 해서 보유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는 자연재해 등의 대형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지급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PML 추정에 근거해서 지급여력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호주의 연방보험감독청 (APRA :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은 출재사와 거래를 갖는 수백의 재보험자를 일일이 감시할 수 없고, 그렇다고 호주 보험자들로 하여금 이들과 거래하지 말라고 할 수 없어 묘안으로 「재보험자 분산책」 (spread rule)을 쓰고 있다. 즉, 비례재보험과 Working XOL에서 재보험자의 보유액을 조정하는 것인데, 幹事再保險者は 위험당 10%, 기타 재보험자는 위험당 5% 이내에서 보유할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보험의 상당량이 다수의 불확실한 재보험자에게 분산되어 출재되는 것보다 소수일지라도 명망있는 재보험자에게 출재되는 것이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 분산책은 실무상 그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2) Finite 재보험

Finite 재보험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은 없으나, 실제상으로는 영국의 경우와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원·재보험자간의 Finite 계약이 재보험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위험전가가 있어야 하며, 위험전가가 있느냐 또는 없느냐의 판단은 외견상의 형식보다는 계약의 본질 규명을 통해 사안별로 결정할 문제라고 보고 있다.

마. 싱가포르

1) 일반재보험

싱가폴에서의 재보험거래는 원칙적으로 경쟁관계하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95년 이후 싱가포르 손해보험협회의 주도하에 원보험회사들이 증권당 화재 5%, 기타 2.5%를 Singapore Re사⁵⁶⁾에 출재하기로 신사협정을 맺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 신사협정의 위반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특별한 제재조치는 없다.

2) Finite 재보험

금융재보험(Financial Re)이 보험회사의 위험관리수단으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싱가포르 통화청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1999.8.18 금융재보험거래에 대한 감독통첩⁵⁷⁾(Notices on financial reinsurance)을 발표한 바, 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정의

- 생명보험 : 최소지급여력의 구성자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다음 조건의 계약
 - 수재사로 자산(재보험료)이 이전되거나 수재사에 부채(재보험금)가 발생하게 되는 조건
 - 수재사가 상기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하거나 또는 상기부채가 감소되는 조건
- 손해보험 : 규범적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우나 다음의 특징을 갖는 계약
 - 다년간에 걸치는 계약기간
 - 보험료 결정에 예정투자수익 반영
 - 보험료, 수수료 등은 보험금 규모 및 지급시기에 따라 결정
 - 계약의 재무적 결과가 계약 초기에 예측가능
 - 자산위험(투자)과 부채위험(보험)이 결합된 보험보장

56) Singapore Re사 : 1973년에 설립된 전업재보험사. 자기자본 1,460억원(납입자본금 590억원), 총자산 1,790억원, 19개 보험회사 지분이 65.5%임.

57)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정보』 99-29, '99.9.6.

② 거래 주체 : 원보험사, 재보험사, 캡티브사

③ 성립요건

o 상당한 정도의 위험전가

· 「상당한」의 의미는 계약의 실질적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수재보험자가 동계약으로 인하여 상당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고, 계약의 결과가 상당한 범위에 걸쳐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

o 위험전가 여부에 대한 평가는 장래에 대해서 이루어짐.

* 생명보험의 위험 : 사망위험, 질병위험, 투자위험, 계약유지위험, 비용위험

손해보험의 위험 : 언더라이팅 위험, 타이밍 위험

④ 거래의 인가여부

o 생명보험 : 모든 금융재보험거래에 대하여 건별로 감독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자체 이사회에 보고.

o 손해보험 : 자체 이사회에 보고

⑤ 공시·보고

o 생명보험

· 출재 : 출재사의 보험금지급 등 非免除 의무사항과 조건, 동 의무사항들이 보험계약준비금 및 잉여금 평가에 미치는 영향

· 수재 : 출재사로부터 향후 환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및 조건, 동 환급금이 보험계약준비금 및 잉여금 평가에 미치는 영향 (이상의 사항을 보험계리인 보고서 요약부문에 포함시켜야 함)

o 손해보험

· 출재 : 담보위험, 누계책임한도, 출재보험료·보험금·재보험 수수료, 자동복원 여부, 보험기간 등의 계약조건을 감독당국에 보고함과 동시에 공시하여야 하며, 미지급 재보험료·미수 재보험금·기타

재보험 미수 등에 관한 정보를 대차대조표에 주석사항으로 표시하여야 함.

- 수재 : 재보험 수입보험료 총액을 공시하여야 하고, 미지급 채무 및 미수 채권은 감독당국에 보고하여야 함.

⑥ 회계처리

- 위험전가 기준을 충족하는 계약은 손익계정에서 보험계약으로 처리하고, 기준충족을 못하는 계약은 예탁금으로 처리
- 금융재보험계약 전기간에 걸쳐 회계처리의 일관성 유지

2. 우리나라의 再保險規制

가. 법적 연혁

우리나라에서 재보험에 관한 法規定은 1962년에 제정되어 1977년에 폐지된 大韓損害再保險公社法에서 규정된 것이 효시이다. 同 公社法은 再保險을 국내 재보험(제16조)과 외국재보험(제17조)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 재보험의 경우, ①모든 보험사업자는 자기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해 公社에 재보험 출재 하여야 하며, ②公社는 자기가 인수한 재보험계약을 다시 再再保할 수 있고, ③재보험과 재재보험의 종류와 한도 등은 재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당시의 재보험은 대한손해재보험공사(1968년에 「대한재보험공사」로 개칭)를 단일창구로 하여 의무재보험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한편, 외국재보험의 경우는 公社만이 외국재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제는 그 후 일부 완화되어 1969년부터는 원보험자도 외국재보험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1977년 종전에 다기화되어 있었던 보험관계 4개 법률⁵⁸⁾이 하나의 보험업

58) 4개 법률은 ① 보험업법 (62. 1. 15 제정) ② 보험모집단속법 (62. 1. 20 제정) ③ 외

법으로 통합·개정되면서 재보험에 관한 규정도 새로운 보험업법으로 통합되었다.

즉, 1977년 제3차 개정보험업법 제18조(재보험)에서 “보험사업자는 그 체결한 보험계약에의한 책임을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보험에 붙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재보험규제와 관련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보험사업자의 위험인수 및 보유에 대한 미비점이 대두되어⁵⁹⁾ 1980년 제4차 개정시 ①재정경제원장관 (1998년 개정법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개정)은 보험사업자의 원보험 인수액 및 보유한도에 대하여 제한을 할 수 있고, ② 보험책임의 이행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재보험처리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으며, ③ 이들 제한은 보험종목별·위험건별로 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사업자의 위험보유와 재보험 처리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이 보험업법 제18조 조항은⁶⁰⁾ 1980년 개정이후, 19년간 개정이 없다가 1999년 2월 개정이 전문 삭제되어 지금은 보험업법상 재보험에 대한 제한 규정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나. 재보험거래의 자유화

우리나라의 재보험은 8.15해방과 6.25사변 등 격동기를 거치는 동안 혼미를 계속하다가⁶¹⁾ 1963년 당시 國家再建最高會議 保險會社特別鑑査團의 건

국보험사업자에 관한 법률 (62. 1. 20 제정) ④ 대한재보험공사법 (62. 12. 29 제정)을 말한다.

59) 노상봉, 『보험업법 해설』, 매일경제신문, p.227

60) 보험업법 제18조 (원보험과 재보험의 관리) :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사업자의 사업규모·자산상태·담보능력 기타 사정에 따라 원보험 인수액 및 보유한도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사업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으로 인한 책임의 이행을 보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재보험 처리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은 보험종목별·위험건별로 행할 수 있다.

61) 1945년에서 1958년까지는 정부의 특별한 규제없이 원보사간 자율적으로 상호재보험이 이루어져 왔고, 1959년에서 1962년까지는 정부의 개입으로 의무재보험이 시도되

의에 따라 설립된 大韓損害再保險公社가 출범해서부터 그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15년간 국영재보험의 독점형태로 영위되어 오다가, 1978년 정부당국의 보험산업의 극대화 정책에 따라 同 公社가 민영화되면서 재보험거래도 상업베이스의 경쟁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민영화조치 이후에도 1984년 초까지 국내의 재보험은 대부분 대한재보험(주)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같은 해 4월부터 정부는 화재, 선박, 적하, 기계 등 4개 종목만을 의무출재토록 하고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제하고 원보사간 상호재보험도 허용하였다. 이들 4개 종목에 대한 의무출재도 1987년 부터 1989년까지 연차적으로 그 출재비율을 축소하고⁶²⁾ 1990년 부터는 의무재보험제도 자체를 전면 폐지하였다.

그러나 의무출재종목과 의무출재비율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재보험거래가 원보사의 자율에 완전히 맡겨졌다고 할 수는 없다. 1968년에 제정된 「손해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 잉여금 및 재보험 관리규정」(생보사의 경우는 그 이듬해에 제정된 생명보험재보험 교환준칙)에 의한 국내우선출재와 1983년에 체결된 「보험요율구득에 관한 협정」이 유효하였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자잉여금 및 재보험관리규정은 보험업법 제18조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규정으로 1998년 손보사·생보사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현행 보험감독규정 제25조 내지 제32조로 흡수)의 제정시까지 30년간 보험사업자의 담보능력 증대와 재보험처리 등에 기준이 되어 온 중요한 규정으로 자리잡아 왔다.

동 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원보험에 있어서 보험사업자의 연간 보유

있음. 이 기간중 재보험회사는 국제재보험(주), 안보재보험(주), 한국재보험공사 등이 있었으나 경영의 어려움으로 설립후 1 2년내에 원보험회사로 전환하거나 흡수·합병됨.

62) 4개 의무출재 종목의 출재비율을 연차적으로 인하 : '87 30%이상, '88 25%이상, '89 20%이상, '90 완전폐지

보험료 총액은 보험계약자잉여금의 500%을 초과할 수 없고, 재보험에 있어서 ① 일반원칙으로 손보사는 보험계약을 출재할 때 국내의 다른 손보사에 우선 출재하여야 하고, ② 보유한 보험금액을 비례적으로 재보험으로 출재할 수 없으며, ③ 해외 재보험자의 신용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Security Guideline)을 제정·운영하여야 하고, ('93.4 신설, '95.9 폐지) ④ 보험계약상 책임한도액의 5% 이상을 출재한 해외 재보험자의 명단과 출재내역을 감독당국에 제출('93.4 신설, '95.9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보험회사간 상호협정형식으로 체결된 「보험요율구득에 관한 협정」의 내용을 보면, ① 화재, 특종, 선박, 항공보험 중 현행 요율서상 인가요율 사용이 어려운 계약에 대해서는 대한재보험(주)이 해외에서 구득한 요율을 사용하며, ② 동 계약에 대한 재보험처리를 함에 있어서는 대한재보험(주)와의 특약 등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재보험망을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후 국내우선출재제도와 대한재보험(주)을 통한 보험요율구득제도는 재보험 자유화 추진과 관련하여 '90년대 중반 우르과이라운드 서비스 협상과 OECD 가입협상에서 항상 제기되는 토의안건 중의 하나였다. 이들 제도는 그 적용 대상종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오다가 화재, 특종 보험을 끝으로 하여 '97.4월 폐지됨으로써 재보험시장의 자유화는 사실상 완료 되었다⁶³⁾.

국내사 우선출재제도는 양질의 물건을 국내의 담보력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많이 보유함으로써 국내보험료의 국외유출방지를 기하기 위함이고, 해외요율구득제도는 요율과당경쟁으로 인한 덤핑요율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국내보험시장에서 보험계약의 모집질서를 건전화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이를 전면 폐지하였음은 국내 전업재보험회사의 경영이 다소 어려워질 가

63) 재보험자유화 일정 (국내우선출재 제외 종목) : 1단계 ('93. 4) · 항공 · 재산종합, 2단계 ('96. 4) · 선박 · 자동차 · 보증 · 적하 · 상해 · 근재 · 장기 등, 3단계 ('97. 4) · 화재 · 특종 (기술, 배상책임, 동산종합 등)

능성이 있다하더라도 경쟁촉진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 등으로 당시 자유화·세계화 추세에 부응하고자 하는데에 연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VI. 結 論

제 I 장에서 살펴본 바 있는 세계재보험시장의 규제감독수준과 관련하여 細分類된 19개 항목중 IAIS회원국들은 다음의 6개 항목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선정하였다. 이 항목은 연차보고서 제출의무(1b), 해외재보험자의 경우 평가기관의 등급·정보자료 이용(1e), 재보험자의 본·지점 검사(2a), 경영정보 공시의무(2g), 감독원칙에 관한 한 원보험자와 재보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3d), 재보험자도 지급능력 평가의 대상(3g) 등이다.

이들 항목들은 국내에서도 현재 시행되고 있으므로 재보험에 대한 우리나라 감독수준은 IAIS회원국 평균수준(2.1) 또는 그 이상을 약간 웃도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해외 재보험자에 대한 평가기관의 등급·정보자료를 이용(1e)하는 문제는 해외재보험자의 신용에 관한 문제로서 원칙적으로 출재사의 개별적 경영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미국 NAIC가 법규정으로 재보험자 자격을 한정하고 외국 재보험자 이용에 엄격한 제한조건을 가하고 있으며,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재보험자에게 출재하는 경우 회계처리상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도 위험의 국내보유 극대화 차원이라기 보다는 재보험금 회수불능위험 차원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다 할 재보험금 회수불능사례는 없을 지라도 재보험 거래가 자유화된지 이미 수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 NAIC의 연차보고서 양식(스케줄 F)에 관한 사항이다. 지급응당일을 넘긴 재보험자 명단과 장기 미수채권을 등 양식에 기록하게 함으로써 해당 계정의 회수 가능성을 진단하고, 90일 초과 미수채권에 대해서 잉여금벌칙(surplus penalty)⁶⁴⁾적용여부 판단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

64) 잉여금벌칙은 90일 초과 미수채권의 일정분을 자산으로 불인정하여 보험계약자 잉

음은 규제목적상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월말 보고서상 재보험에 관한 사항은 주로 종목별 출수재실적(국내외)에 관한 것으로서 재보험의 실적보고와 해외출수재 역조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 따라서 위 스케줄 F와 관련해서 재보험청산을 상습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재보험자를 파악하고 재보험자 신용위험을 측정케 할 수 있는 양식제정이 있었으면 한다. 이 양식제정은 장기미수 재보험금의 회수를 촉진하고 재보험자 선정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며, 아울러 재보험에의 의존도를 평가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잉여금 벌칙제도는 검토수준에서 장기 과제로 남겨 둬야 바람직 할 것으로 본다.

셋째, Finite Risk 상품의 이용이다. 언더라이팅리스크와 타이밍리스크를 결합하고 있는 이 상품은 이미 구미 각국에서 인기를 더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기업경영원칙이 주주가치의 향상에 집중되고 있는데다 금융·자본시장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고, 위험관리문화도 소극적 인식에서 적극적인 인식으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Finite 재보험방식은 전통보험의 대체가 아니라 전통보험이 부보불가한 분야에서 보험사이클에 관계없이 보완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분야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이 세법과 회계원칙을 속속 개정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본질과 전통보험의 범주 내에서 본격적인 도입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재보험의 금융적 기능은 보험산업이 자유화되고 감독이 지급능력중심의 건정성규제 방향으로 이동할 때 특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미국은 재보험 크레딧 부여를 무기로 해서 재보험자의 자격과 거래조건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이 과거 우리의 국내우선출재 및 요율구득협정에 의한 제한과 규제측면에서 다를 바가 없

여금의 감소를 가져오게 함. 불인정 정도는 90일 경과 재보험미수금이 전체 재보험미수금의 20%이하일 경우는 90일 경과 재보험 미수금의 20%, 90일 경과 재보험미수금이 20% 이상일 경우는 전체 재보험미수금의 20%를 자산으로 불인정함.

다고 본다. 다만, 미국의 제한은 재보험자의 신용위험을 우려해서 회계제도를 통한 간접규제이고, 우리는 국내보유 극대화 외화보험료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규제목적만 다를 뿐이다. 직접규제나 간접규제나 구별의 의미는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97년 국내우선출재와 요율구득협정을 폐지해서 완전자유화 상태에 있다. Security Guideline 제정운영과 5% 이상을 출제한 해외 재보험자 명단과 내역 제출도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95년에 폐지되었다. 이제는 재보험계약의 체결, 거래당사자의 선정, 계약내용의 결정 등 어디에도 제도적 규제는 없다. 일본의 손해보험사들은 그들의 자회사 격인 Toa Re사를 중심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보유극대화를 취하고 있고, 동남아 국가들은 국내보유 우선주의로 다시 회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도 이제는 재보험거래가 완전자유화 되었으므로 재보험금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의 신용위험으로부터 보험계약자 이익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안을 생각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국내에서의 보유위험은 지급여력 기준의 적용으로 통제가 가능하나, 국외로 전가된 위험은 재보험거래의 질을 높임으로서만 그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위험전가와 위험재무(현금의 시간적 가치활용)를 결합해서 만들어진 Finite Risk 방안은 (재)보험 수요자를 요율파동, 담보력파동, 손해율파동의 순환기적 파동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보유의 증대와 재무구조의 개선 그리고 기업구조조정을 촉진케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담보위험의 범위는 언더라이팅리스크, 타이밍리스크, 신용위험, 금리·환율위험 등이고, 담보의 시간적 범위는 과거·현재·미래를 망라한다. 재보험방식은 비례재보험, 초과액재보험, 위험당XOL, 대재해XOL, stop loss 형태를 취한다. 주요계약형태로는 보험금포트폴리오전가(LPT) 역진전보험금담보(ADC), 금융비례재보험(FQS), 보험금분산특약(SLT) 등이 있다.

이 결합상품에서 평가해야 할 장점은 대상위험을 몇 년간에 걸쳐 관찰하여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본질적으로 다른 위험(풍수재 위험과 금리위험 등)을 패키지와 할 수 있으며, 출재사가 입는 대재해손해에 대해서도 사전적 파이낸싱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종래 부보가 어려웠던 자연재해위험은 물론 정치위험, 원보험자의 경영위험, 금융위험 등도 스톱로스커버 등 Finite Risk 방안(초과분은 XOL 일반재보험으로 소화)으로 부보가능하게 해준다. 보험 또는 재보험 수요자 입장에서는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규제측면에서 있다. 이 Finite 계약이 과연 재보험으로 성립될 수 있는가가 문제다. 위험전가와 파이낸싱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이 상품이 포장은 재보험으로 하고 기능을 다르게 할 때 이를 재보험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계보험감독관들은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세계각국은 회계규정의 개정을 통해서 「상당한 위험의 전가」와 재보사 입장에서 「상당한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을 재보험성립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원보험자가 재보험자의 손실을 전액 보전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거래는 재보험 거래가 아니다. 위험전가 여부가 불분명한 계약도 재보험거래가 아니다. 재보험으로 성립되어야 출재 보험수수료 수입을 수수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할 수가 있다. 또한 인식된 수익은 손실보전 또는 계약자 배당재원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처리내용을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결산보고서상에 주석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또한 출재사는 매 계약체결 또는 해약을 감독당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새로운 회계규정의 도입으로 금융재보험의 거래가 위축되는 듯 하였으나, 오히려 성립요건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되어 금융과 보험이 혼합된 Finite Risk (재)보험담보는 세계보험시장에서 그 활용도를 더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규제완화와 국제화로 그 효용가치가 더욱 증대되고 있고, 출재사로서도

자신의 리스크프로파일을 보다 효율적이고 정밀하게 해주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1998년 6월 생명보험에 대한 재무재보험을 대장성 고시로 규정화해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일부 보험사의 유동성 및 지급여력문제로 보험금포트폴리오 이 전계약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Finite 재보험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정도는 더 많은 조사결과에 따라 정할 문제이지만, 일단은 지나친 규제로 동 솔루션의 장점, 즉, 보험커버의 순환기적 파동으로부터 보호, 보유증대와 재무구조의 개선, 대재해커버와 비용절감효과 그리고 보험산업의 자본시장으로의 접근용이 등이 저해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 판단기준을 영국에서와 같이 경제적 실체에 두어 재보험의 형태가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Finite 재보험을 제외한 보험위험의 증권화 상품과 보험파생상품은 일반보험과는 다르게 취급되고 있다. CBOT의 보험파생상품은 재보험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급능력기준 충족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용이 활발하지 못하다. 감독 및 과세측면에서 이들 솔루션에 대한 적용은 현재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ART솔루션은 일반재보험수요의 지원상품으로 보험료가 1,000억 달러 수준으로 세계 기업성 손해보험료의 25%를 점하고 있음은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개방적 발전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 (재)보험시장도 시장점유율 경쟁이 아니라 保有危險總體의 건정성 향상과 함께 위험분산과 자본조달에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감독측면에 있어서 보험위험의 증권화 상품과 파생상품은 그 거래가 복잡적이고 전문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건전규제제도의 개선, 회계처리기준의 개선, 공시강화를 통한 시장규율기능 강화 그리고 자체의 내부통제제도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

<국내 문헌>

- 국용호, 「재무재보험제도 도입방안」, 『월간생협』, 생명보험협회, 1999.1.
- 김기현, 「재보험시장 개방에 따른 재보험거래상의 당면과제」, 『보험학회지』 50호, 1997.
- , 『재보험실무』, 보험연수원, 1998.
- 노상봉, 『보험업법 해설』, 매일경제신문, 1998
- 박종원, 「국내외 재보험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손해보험』, 1999.4월호
- 손광기, 「재보험자유화 이후에 파생될수 있는 주요 문제점 예측과 그 대응방안 고찰」, 『보험조사월보』, 1996.6.
- 손광기·김헌수·김광룡, 『손해보험 재무리스크관리론』, 보험연수원, 1997.
- 이기형·김평원, 『손해보험의 금융재보험 동향』,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1997.11.
- 전남득·박창신, 『금융재보험에 관한 연구』, 대한재보험(주), 1997.9.
- 정봉은·이승철,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구조조정』,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1997. 7.
- 금융감독원, 「세계보험시장의 최근동향과 전망」, 『금융감독정보』 99-25호, 1999.8.9.
- , 「세계재보험시장 동향 및 향후전망」, 『금융감독정보』 99-37호, 1999.11.8.
- , 「싱가폴통화청, 금융재보험에 관한 감독통첩 발표」, 『금융감독정보』 99-29호, 1999.9.6.
-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정책 선진화 방안』, 1998.12.

보험감독원, 『한국보험시장의 구조』, 1992.

<외국문헌>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ART-Financial Reinsurance : The Australian Regulator's Perspective, Australian Forum", *Asia Insurance Review*, 1999.

Cacelia Kempler · William Duffy, "Insolvent Reinsurers Pose Even Greater Risk", *Best's Review*, April 1994

Dan Lonkerich, "NAIC urged to back securitization", *National Underwriter*, Sept. 21, 1998.

Dennis Campbell, *International Insurance Law & Regulation*, Longman Law, Tax & Finance, 1997

Esther Baur, "Turning ART into Science", *Reactions*, Sept. 1999.

Global Financial Press, *1997 Annual Statement Changes*, 1998.

Heide E.Hutter, "Convergence and innovation : Developments in the Reinsurance marketplace", *Risk Management*, Sept. 1997.

IAIS, *Insurance Supervisory Principles*, Sept. 1997.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Reinsurance : Fundamentals and New Challenges*, 3rd Edition, 1995.

Japan Non-Life Insurance, *Newsletter* No. 52, April 1999.

Jennifer GA Donohue, *The Insurance Single Passport*, Butterworths, 1995.

Jim Bannister, "Alternative Risk Transfer : Changing Insurance Market", *Japan Insurance News*, Nov./ Dec. 1997.

- John J. Koller, "Making the most of the capital markets : Securitization, Part II", *Risk Management*, Aug. 1999.
- Jonathan F. Bank 외, "The Regulation of Reinsurance in United States", *Journal of Insurance Regulation*, Vol. II, No. 2, 1994.
- Laura Beller, "Staying on top of the reinsurance market", *Rough Notes*, Aug. 1997.
- Lisa S. Howard, "Alt. risk transfer on the rise in U. K.", *National Underwriter*, Apr. 12, 1999.
- NAIC, "Credit for Reinsurance Model Law", *Model Regulation Service*, Oct. 1996.
- Peter A. Gentile, "ART : A part(not all) of client solutions", *National Underwriter*, July 1998.
- R. George Monti & Andrew Barile, *A Practical Guide to Finite Risk Insurance and Reinsurance*, John Wiley & Sons, Inc. 1995.
- R.C.L. Bakker, H.j.M. Teeuwen, "The IAIS Survey on Reinsurance Supervision",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No. 89, Oct. 1998
- Richard Spiller · Oliver Mellman, "ART prospers in the soft market", *Reactions*, July 1999.
- Richard Smith, "The Australian Reinsurance Issues for Supervisors", *Asia Insurance Review*, March 1999
- Swiss Re, *Insurance derivatives and securitization*, Sigma No. 5, 1996.
- , *Alternative risk transfer via finite risk reinsurance : an effective contribution to the stability of the insurance industry*, Sigma No. 5, 1997.

_____, *The global reinsurance market in the midst of consolidations*, Sigma No.9, 1999.8.

_____, *Natural catastrophes and man-made disasters 1998*, Sigma No.1, 1999.

_____, *Alternative risk transfer(ART) for corporations : a passing fashion or risk management for the 21st century*, Sigma No.2, 1999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A World View of Insurance Solvency Regulation*, A Report by the Subcommittee on Oversight and Investigations of the 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 U. S. House of Representatives, 1994.